「국가기록관리 혁신 TF」 기록관리 개선방안

각급 기관 기록관리 담당자 의견수렴 결과

2017. 12.

국가기록관리 혁신 T/F

목 차

Ⅰ. 의견수렴 개요 ····· 1

1. 개 요 ····· 2
2. 주요 내용 ····· 3
3. 향후 계획 ····· 3
(참고) 의견수렴 결과 ····· 4

Ⅱ. 전체회의 및 토론 결과 ····· 5

1. 공공업무의 철저한 기록화 ····· 6
2. 기록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인프라 정비 ····· 10
3. 환경변화에 대응한 전자기록관리 체계의 재설계/ 기록정보 공개·서비스 확대 ····· 15
4. 대통령기록관리 제도 개혁 방향 ····· 20

Ⅲ. 분임토의 결과 ····· 24

1. 기록관의 역할과 전문성 강화 ····· 25
2. 지방기록관리 정상화 ····· 30
3. 기록물 평가와 분류체계 정비 ····· 33
4. 기록관리 프로세스 개선 ····· 38
5. 기록물 공개 관리 및 서비스 개선 ····· 43
6. 기록시스템 개선 ····· 45
7. 대통령기록관리 제도 개선 ····· 48

Ⅳ. 기타 의견 접수 결과 ····· 52

▌ 의견수렴 개요

1. 개요

2. 주요 내용

3. 향후 계획

(참고) 의견수렴 결과

Ⅰ. 의견수렴 개요

'2017년 기록관리 담당자 연찬회'를 통해 국가기록관리 혁신 TF의 **'기록관리 개선 방안'**에 대한 **각급 기관의 의견을 수렴**(전체회의 및 분임토의 등) 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1. 개 요

○ **(일 시)** '17. 12. 7.(목) ~ 12. 8.(금)

○ **(장 소)** 경주 한화리조트

○ **(참석인원)** 총 318명

- 국가기록관리 혁신 TF : 위원 10명*
- 각급 기관 : 기록관리 담당자 246명
- 국가기록원 : 원장, 토론 주제 소관부서, TF 지원팀 등 62명

* 안병우 위원장, 심성보·조영삼·홍성덕(1분과), 설문원·이원규·현문수(2분과), 이상민·전진한·임진희(3분과)

구 분		참석인원(명)
총 계		**318**
국가기록관리 혁신 TF 위원		10
각급 기관	중앙행정기관	28
	특별행정기관	46
	헌법기관	4
	지방자치단체	49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27
	공공기관	62
	대학	30
국가기록원		62

2. 주요 내용

○ 전체회의 · 토론 : 기록관리 개선방안 발표 및 전체토론 * **사회 : 심성보 위원**

구분	발표내용	발표 위원	지정토론자
공공기록 관리 개선	① 공공업무의 철저한 기록화	설문원 위원	이강모 기록연구사 (국토교통부)
	② 기록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인프라 정비	이원규 위원	이창순 기록연구사 (충북보은교육지원청)
	③ 환경변화에 대응한 전자기록관리 체계의 재설계/기록정보의 공개·서비스 확대	현문수 위원	정상희 기록연구사 (충북도청)
대통령기록 관리 개선	④ 대통령기록관리 제도 개혁 방향	이상민 위원	이주환 기록연구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사무처)

○ 분임토의 : 전체회의 내용을 세분화하여 혁신 과제별 집중토론

분임토의 주제	분임토의 담당 위원 (소관 과제별)	분임 대표/ 결과 발표
① 기록관의 역할과 전문성 강화	안병우 위원장, 이원규 위원	이강모 기록연구사 (국토교통부)
② 지방기록관리 정상화	조영삼 위원, 홍성덕 위원	임흥기 기록연구사 (나주시)
③ 기록물평가와 분류체계 정비	설문원 위원	이창순 기록연구사 (충북보은교육지원청)
④ 기록관리 프로세스 개선	현문수 위원	이정옥 기록연구사 (제주시교육청)
⑤ 기록물공개관리 및 서비스 개선	심성보 위원, 전진한 위원	박문재 기록연구사 (부산지방병무청)/ 이준봉 기록연구사 (경인지방병무청)
⑥ 기록시스템 개선	임진희 위원	박혁준 기록연구사 (안동시)
⑦ 대통령기록관리 제도개선	이상민 위원	이주환 기록연구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사무처)

3. 향후 계획

○ 국가기록관리 혁신 TF 기록관리 개선 방안 보고서 반영(위원)

○ 의견수렴 결과 원내외 공유(메모보고, TF게시판) 및 우리 원 업무 추진 시 검토

참 고 의견수렴 결과 * 4개 영역 32개 주요 의견

영역	주요 의견	
공공업무의 철저한 기록화 (6개)	1. 기록물의 범주 및 등록 대상 명확화 필요	
	2. 보존기간 7종의 폐지 논의 시 이관대상·보존시설 정비 등 관련 절차·법규의 개정 병행	
	3. 동종 대량 기록물 등 국가기록원 이관·선별 기준 명확화	
	4. BRM-기록분류체계의 관계 설정 및 오분류 개선 등 기록물 분류체계 정비를 위한 컨트롤타워 설치 필요	
	5. 생산된 기록물의 현황 조사 시 구체적인 방안 제시 요망	
	6. 기관별(처리과-기록관-기록원) 권한 설정 등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기록물처분동결제도 도입	
기록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인프라 정비 (12개)	1. 기록관의 기능, 전문요원의 역할·직무 재정립 등 1인 기록관 체계 개선 - 기록관 통합은 기관 특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2.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채용·승진·순환 및 정규직화 등 처우개선	
	3. 기록관리 현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인사교류 등 국가기록원의 인력구조 개편 - 기록관-기록원 간 인사교류에 대한 찬반의견이 있음	
	4. 기록관리 기관평가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기관평가 제도 개선 또는 폐지 검토	
	5.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을 위한 법령 정비 및 소장기록물 분석·분류·기술 등 지적통제 역량 강화 - 예산지원을 위한 근거 법령 및 조직·인력 배치를 위한 근거 조례 제정 등	
	6. 기관장·간부 등 기관 내 기록관리 업무에 대한 인식 제고 방안 마련(교육 등)	
	7. 학문의 독립성 및 후진 양성을 위해 기록관리대학원의 전임교수 확보 방안 마련	
	8.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기록관리 재교육 제도 수립 및 운영	
	9. 공공기록물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유관 법령과의 상충 해소	
	10. 동일 부처 기록물이 서울·대전·부산에 분산 보존되고 있어 국가기록원 보존(서고) 체계 재검토 필요	
	11. 기록물 생산현황 보고 제도의 개선 또는 지속 여부 재검토	
	12. 공공기관 맞춤형 기록관리 체계 수립을 위한 지원 요청 - 기록시스템, 기관 고유업무 기록관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 확대, 의무기록 관리 등	
환경변화에 대응한 전자기록관리 체계의 재설계/기록정보의 공개·서비스 확대 (10개)	전자기록 분야 (7개)	1. 행정정보데이터세트 등 다양한 형태의 기록을 관리하도록 개선
		2. 분류체계 및 메타데이터 관리에서의 유연성 및 서비스 개선
		3. 온나라BRM 유관부서 협업 등을 통한 생산 단계의 기록관리 강화
		4. 기관 내 기록관리 유관 부서(정보화 부서 등)와의 협업 체계 마련
		5. 사용자 중심의 기록 검색 및 기록시스템 이용서비스 체계 마련
		6. SNS 기록화 방안 구체화
		7. 종이문서도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체계 마련
	공개 서비스 분야 (3개)	8. 5년 주기 공개재분류 제도 개선 및 지속 여부 재검토
		9. 정보공개 업무와 기록관리 업무 담당을 분리하여 운영
		10. 공개 대상 확대 및 통합검색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록관리시스템과 정보공개시스템의 통합 활용 방안 마련
대통령기록관리 제도 개혁 방향 (4개)	1. 대통령 지정기록물의 열람 절차 및 명백한 오류 지정 시 해제 방안	
	2. 대통령기록관(국가기록원) 직원의 전문성 강화(소장기록물 분석·분류·기술 등 지적통제 기능 등)	
	3. 대통령기록물 이관 시 대통령 자문기구 기록물의 선별·이관 방안 강구	
	4. 디지털 기반의 대통령기록관 모델 검토 및 대통령기록관의 독립성·전문성 보장	

▌ 전체회의 및 토론 결과

1. 공공업무의 철저한 기록화
2. 기록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인프라 정비
3. 환경변화에 대응한 전자기록관리 체계의 재설계/기록정보의 공개·서비스 확대
4. 대통령기록관리 제도 개혁 방향

Ⅱ. 전체회의 및 토론 결과

전체회의 제1발표 **1. 공공업무의 철저한 기록화 (설문원 위원)**

□ 지정토론 : 이강모 기록연구사 (국토교통부)

(들어가는 말) 의견수렴 연찬회에 오기 전에 홈페이지에 제시된 의견들을 봤는데, 토론이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음. 혁신방안에 대한 각급 기관의 생각과 의견이 전혀 다른 경우가 있어, 기록관리에 어느 게 정답일 수가 없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나옴. 오늘 설문원 위원이 발표한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함. 이렇게 개혁이 되고 바뀌어야 되는 부분에는 불만이 없고 적극적으로 후원과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입장임. 여기에 몇 가지만 추가하는 방식으로 토론을 하겠음.

(기록물의 범주) 공공기록물법의 기록물의 범위가 굉장히 넓은 게 사실임. 도서도 기록물의 범주에 포함되나 폐기는 유연하게 진행되고 있음. 기록물에 대한 하위 개념을 따로 만들었으면 좋겠음. 생산되었다면 어디까지 관리할지, 어디까지 수집할 지에 대한 하위 개념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공공기록물법에 처벌 조항이 있으나 무단폐기, 무단유출 등으로 처벌 대상으로서의 기록물의 범주가 좁아짐.

(기록물의 등록) 공공기록물법에 기록물의 접수와 생산에 대한 규정이 많이 있다. 과연 어디서부터 생산인지에 대해 의문임. 자기 책상에서 자기가 만든 기록물은 어디서부터 기록이고, 어디서부터 기록이 아닌지, 시험 답안지를 갖고 있으면 등록해서 관리하여야 하는지, 대한민국 천만인 서명부가 있는데, 이걸 어디까지 관리할 것인지, 구체적인 관리 방안이 없음.

현실적으로는 기록물을 등록하지 않으면 관리를 할 수가 없음. 바꿔 말하면 등록된 기록물만 관리할 수 있음. 아무리 조직의 업무를 파악하고, 조직에서 기록물 관리를 인식하더라도 처리과 담당자가 등록하지 않으면 기록물로 관리되지 않음. 그런 면에서 등록은 기록관리의 첫 단추임. 각급기관 기록관리 담당자들은 수천 번 고민했을 것임. 그러나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았음. 처리과를 직접 찾아가서 등록하도록 지도·점검하고 독려하지 않으면 기록물로 등록되기 어려움. 등록에 대한 강력한 법적 규정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권한도 커져야 함.

(평가제도의 재설계) 보존기간 7종 폐지 유예에 동의하며 이미 추진했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함. 이렇게 바꿨을 때 유의할 점은 공공기록물법 제정이 18년째이며, 보존기간 7종 제도가 기록관리 프로세스에 정착되어 있음. 보존기간 종류가 바뀌면 이와 관련된 기록관리 체계가 바뀌어야 함. 공공기록물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함. 보존기간 종류 변경에 따라 국가기록원의 수집 범위가 달라져야 하고, 현재 기록관에서 10년 이하만 관리하도록 되어, 새로운 정리지침이 제시되어야 함. 또한 이와 관련된 여타의 지침에도 영향을 끼쳐, 전반적으로 개정이 필요함. 보존기간 종류의 변경이 다양한 기록관리 프로세스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진행하면 좋겠음.

종전의 기록물분류기준표에는 보존장소와 보존방법이 포함되었음. 비치기록물은 각급 기관에서 관리 가능하나, 현재는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기록물 이용이나 기록물의 가치 측면에서 국가기록원으로의 이관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함. 기록물 분류체계를 새롭게 정리할 때 비치기록물을 각급 기관에서 관리하도록 적극적인 반영 필요. 기록물 분류체계 개정 시 각 부처의 기록관의 역할을 영국 수준으로 끌어 올렸으면 함. 이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갈릴 것임. 법무부의 경우 별도의 기록관을 지어 모든 기관의 기록물을 이관하여 통합관리하는 게 가능하나, 교육청의 경우 의견이 다름. 교육청은 모든 기관의

기록물을 이관 받을 수용 능력이 안 되는데, 기록관을 통합하면 인력 부분에서 대응이 어려움.

(기록물 처분동결제도) 기록처분동결 제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우리나라는 외국의 기록관리와 체계가 달라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처분동결제도가 필요함.

우리나라의 경우, 기록물 처분 동결 지시가 협조사항이지 강제사항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함. 각급기관에서는 기록물의 폐기 여부를 국가기록원에서 상관할 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음. 기록처분동결 제도 수립 시 기록관의 역할이 들어가야 함. 예를 들면, 대통령비서실의 실장급의 기록물을 처분하지 말라고 하고, 재판에 활용하고 했다면 그 이전에 과거까지 소급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구성이 되었으면 함. 각 기관 연구사의 전문성을 국가기록원에서 따라 갈 수가 없음. 특별행정기관이 있는 기록관에도 기록처분동결 제도를 적용한다면 국가기록원에서 어떻게 어느 범위로 접근할 건지 등 고려 필요.

(혁신 TF 운영) 국가기록관리 혁신 TF를 길게 갈 필요가 있음. 과제를 구체적으로 계속 논의할 팀의 구성이 필요함. 국가기록관리 혁신 TF 이후 새로운 팀이 구성되면 어떨지 생각해 봄.

□ 지정토론(이강모)에 대한 발표자 답변(설문원 위원)

(기록물의 범주) 첫 번째, 기록의 범주에 대한 지적에 동의함. 기록관리기준표 안에 업무별 단위과제나 상위 업무별로 어떤 기록이 생산되는지에 대해 표시가 되어야 함. 기록조사를 통해 어떤 기록을 남겨야 하는지 새로운 기록관리기준표에 표시되어야 함. 업무가 있는 곳에 기록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기록관리 범주가 정해지는 것임. 기록의 범주 규정은 넓게 갈 수 밖에 없으며 기관에서 생산되는 업무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근거가 될 수 있어야 함.

(기록물의 등록) 두 번째, 미등록 기록물에 대한 규제와 관련하여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의 권한 강화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이를 고려하도록 하겠음.

(평가체계 재설계) 세 번째, 보존기간 7종 폐지 시 국가기록원의 수집 범위도 달라져야 한다는 의견은 당연한 것임. 이원규 위원이 발표할 텐데, 영구보존 기록물만 국가기록원에서 수집하는 방향임. 각급 기관 기록관이 장기적으로 보존하고 비치해야하는 기록물이 생산될 수 밖에 없음. 영구보존 기록물이면서 비치기록물인 경우, 전자기록 관점에서 매우 장기적으로 관리해야하며, 시스템적·제도적·기술적 지원이 같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기록물처분동결제도) 기록처분동결 제도 수립 시 한국은 미국·호주와는 다른 제도적 고려사항이 있다는 것이 중요함. 기록물 처분 동결과 관련하여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26조에 조문이 있으나, 이를 제도화 시키자는 주장의 이면에는 등록되지 않은 기록도 진상 규명이 필요하면 기록으로 확보해서 같이 보존하자는 의미가 들어가 있음. 단순히 기록물 폐기를 하지 말라는 명령이 아니라, 등록되지 않고 파기되거나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임. 해외 사례는 지금까지 관리 대상이 아닌 기록물을 국가기록원장이 기록으로 선언하는 제도가 있음.

다만, 기록처분동결 제도의 소급 적용은 고려하지 않고 있음. 소급 적용은 어려운 문제임. 사안이 발생한 시점부터 기록으로 선언하고, 기록으로 등록된 경우 보존기간 상향은 가능함. 그러나 소급해서 모두 수집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님.

(혁신 TF 운영) 국가기록관리 혁신 TF가 장기적으로 현장과 소통하도록 기능하기 위한 조직을 만들어 달라는 것에 동의함.

전체회의 제2발표 2. 기록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인프라 정비 (이원규 위원)

□ 지정토론 : 이창순 기록연구사 (충북보은교육지원청)

(기록관의 역할·기능) 1인 기록관 체계에서 기록관리 현장을 개척한다는 자세로 일해 왔다고 생각했는데, 발표하신 많은 내용을 앞으로도 1인 기록관 체계에서 다 해낼 수 있을지 의구심이 생김. 초기 기록연구사 시절 기관 평가지표만 열심히 해보면 많이 알게 되고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조언을 들었음. 현장에서 과연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할 때, 경력연수가 지나면서 제게는 기관평가가 기관 기록관리 업무의 자율성을 얽어매는 게 됨. 공개재분류 업무와 관련하여 한 처리과 1만건 중 70% 비공개, 5년마다 연구사가 내용 쓰고 처리과 의견조회하고 검토해야 함. 이것을 2009년 전까지 공개재분류하라는 공문이 왔었음. 무리한 정책이었다고 봄. 기록관의 역할이나 문제점 중에 이런 것은 언급되지 않았음. 공공기록관리 현황과 문제점 파악은 좋은데 제 개인의 기록관의 문제를 해결해 줄지 의문이 있음. 1인 기록관 체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방안이나 대안이 나오지 않는 한 현재의 문제점은 바뀌지 않음. '기록관을 둔다' 라는 공공기록물법의 조문을 기관에서는 조직이 아니라 한 명의 기록연구사를 둔다고 해석함. 기록관 설치의 자율성 부여가 작은 기관의 1인 기록관 체제의 기관에는 극단적으로 해석 될 수 있어 기록관이 더욱 소규모화 되지 않을까 우려됨.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도 고민되어야 하고, 이런 게 해결되어야 함.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의 관계 재정립) 현장에서 국가기록원의 도움을 많이 받았으나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부터는 우리 보다 경험이 없는 분들이 각급 기관 기록관리를 지원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국가기록원 직원들의 태도나 자세가 달라져야 하고, 처리과에 대해 먼저 공부해야 하나,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했음. 앞으로는 현장을 더 연구하는 구조로 국가기록원의 인력 구조를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함.

중앙행정기관, 교육청, 지자체, 공공기관 부분을 직접 보시고 업무해 주기 바람. 현재는 기관평가 시 한 곳에 모아서 의견을 듣고 있으나, 예전에는 현장에 오셔서 직접 확인하고, 반영해 준 부분도 있음. 기관평가 폐지는 공감함. 기록관리컨설팅을 하려면 뭘 알아야 함. 그런 부분이 재정립 부분에 들어와야 함. 현장이해를 높일 수 있는 인사교류 등이 필요함.

(지방기록관리 정상화) 지방기록관리 정상화 잘 모르는 부분이나, 충북도청에서 들은 얘기임. 충북에서 부지사 하다가 원장으로 가는 경우, 우리 부지사가 원장으로 갔으니, 우리 기관에서 계획서를 잘 내면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세울 수 있는 기대가 있었으나 아직 설립이 안 됨. 가장 큰 문제가 예산이라 생각함. 예산 지원의 근거가 없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개정을 해야 중앙 정부에서 지방 정부를 지원할 수 있을 것임.

지방기록화 진흥을 위한 학교 역사관 활성화는 반대 의견임. 예전에 교과서 박물관 학예연구사로 근무했는데, 이화여고, 배재고는 아직까지 학교 박물관이 유지되나, 지방의 100년이 넘은 학교는 없어진 데가 많음. 학교 역사관 활성화 부분은 시대에 맞지 않아 보임. 현재 역사박물관이 있는 학교도 인력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며, 차라리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게 대안이 될 수 있음.

(기록관리직의 윤리·전문성 강화) 기록관리를 정치권에서, 힘 있는 사람들이 악용할 수 있다는 걸 배울 수 있었음. 기관이나 간부들이 기록관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몇 시간이 아니라 교육시간을 늘려야 함. 기록관리 인식 개선을 위한 선제적 조건 마련 필요. 기록연구사들은 윤리의식을 되새기고 자극을 받을 수 있으나, 선출직 기관장은 전혀 못 받음.

(전문요원 전문성 강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양성 및 인증제 도입과 관련하여 전임교수 확보가 굉장히 필요함. 2000년대 초부터 공부시작하신 분들은 20년이 다 되어감. 학교나 학계에서 후진 양성을 위해 힘쓰는 구조가 없음. 박사를 공부하고 과정을 거쳐 학교 쪽에서도 일할 수 있는 저변이 만들어져야 함. 기록관리 1세대 중에 문헌정보학이나 역사학에 귀속되고 있어, 기록관리학의 독립성이 부족함. 전문교수 요원 확보 등 강화 필요함. 학계에서 후진 양성할 수 있는 체제가 강화되고 제도적으로 마련되면 좋겠음. 기존에 국가기록원과 중앙행정기관의 인사교류를 2년 간 했었음. 근무한 지 10년이 넘은 기록연구사분들이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게 현장의 모습임. 여성분들 결혼, 출산, 양육, 현장에서의 기록관리 경험을 늘리는 데 제한이 있는 게 사실임. 기록관리 재교육을 위한 채널이 필요함. 근무하신 지 10년 이상 된 기록연구사들을 기록관리 정책이나 표준을 개발하는 게 투입해서 단기간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조직과 채널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기록관리 현장과 이상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해결이 어렵더라도, 원장님이 추진해주셔서 인사교류를 한다면 1년 동안 무형에서 유형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임.

□ 지정토론(이창순)에 대한 발표자 답변(이원규 위원)

(기록관의 역할·기능) 이창순 선생님이 토론을 통해 제가 고민하고 있던 부분의 문제점을 확인해 주셔서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됨. 1인 기록관 체제로는 지금 논의하는 부분들을 할 수 없음. 도전적으로 혁파하는 논리를 만들어 내는 게 관건임. 그런 부분에 대해 혁신의 계기나 터닝포인트를 잡기 위한 정책을 세우기 위해 여러분도 아이디어를 많이 주시기 바람.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아카이브로 바꾸자는 방안에 대해 전문인력을 늘리고, 기록관리 전문직은 기록관리 업무에 몰두하고, 비전문가도 기록관리에 분야에 종사하며 일할 수 구조를 만들어가고자 함. 기관이 자율적으로 찾아내야 하는 부분임.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의 관계 재정립) 기록관 구성의 자율성은 기록관의 형태를 통합형 아카이브로 할 거냐 기존 체제를 유지할거냐에 대한 것임. 기타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을 아카이브로 하는데, 건물도 짓고 꼭 그럴 필요가 있는지, 라키비움의 형태도 있고, 인사교류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있음. 그 중에 핵심 사항은 기관평가, 조사 등 국가기록원이 각급기관 기록관리 업무에 개입하는 것을 최소화 하고, 맞춤형 지원 서비스 체계를 수립하는 것임. 예를 들어 국가기록원에서 국토부 기록물 수집하고, 기술했던 담당자와 국토부 기록연구사를 맞바꾸어 보자는 것임. 기록관 현장을 보고, 아카이브 경험도 하고, 같은 분야의 전문성을 높여 가는 것임. 국가기록원 기획팀에 간다는 건 별 의미 없다고 보며, 기록관과 아카이브를 연계하는 인사교류를 생각함

(지방기록관리 정상화) 박물관 미술관 지원은 법령에 따라 주로 민간 분야에 예산을 투입되는 것임. 민간 기록관을 진흥하기 위한 법령 체계는 별도로 검토하고 있음. 기초단체와 교육청을 아카이브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음.

(기록관리직의 윤리·전문성 강화) 기관장 등 고위직 공무원의 윤리의식 고취를 위한 방안 등은 공감함. 기록관리학 대학원의 전임교원 확보는 대학의 정책과 관련 문제이며, 아카이브의 확장 시 배치할 전문인력의 확보 차원에서도 중요한 과제임.

□ 자유토론1(유영필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일하는 방식-종이문서 줄이기) 지금까지 안 다루어진 내용을 말씀드리려 함. 사무실 프린터와 파쇄기를 없앨 필요가 있음. 국회 요구 자료의 양이 상당한데 출력해서 제출하고 있음. 국회제출을 위한 자료집을 만든 후 파일 주소를 링크해서 온라인으로 제출이 가능하므로, 효율적인

자료 제출 체계로 개선이 필요함. 또한, 이메일로도 자료를 많이 주고 받을 것이므로 이메일 관리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해주기 바람

□ 자유토론2(조윤희 한국남동발전)

(기타공공기관 기록관리) 기타공공기관 소속 기록관 제도 측면에서 기타 공공기관 고려해주신 점이 고무적임. 기관 전체의 기록물관리를 책임지는 정부산하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강조하시나,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는 기관이나, 전문요원이 없는 기관도 많음. 정부경영평가에 기록관리 관련 평가지표를 넣어달라는 요청을 많이 하였음. 자율성이 있어서 기관 맞춤형 기록관리가 가능한 측면이 있으나, 현실적인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고민이 많음.

□ 자유토론2(조윤희)에 대한 발표자 답변(이원규 위원)

기관경영평가의 기록관리 지표 및 상급기관과의 평가를 고려하고 있으며, 대학의 평가와 맞물리는 체계도 검토 중임

전체회의 제3발표 **3. 환경변화에 대응한 전자기록관리 체계의 재설계/ 기록정보 공개·서비스 확대 (현문수 위원)**

□ 지정토론 : 정상희 기록연구사 (충북도청)

(들어가는 말) 10여년 전에 기록관리 혁신안이 나오고 또 다시 혁신이 이야기되고 있는 시기임. 기록학계 훌륭하신 분들이 만든 국가기록관리 혁신안에 대한 기록관리계의 기대가 높음. 혁신안을 만드신 분들도 완벽한 결과도출을 위해 현장 연구사의 검토가 절실하다고 말씀하신다고 들었는데, 그것은 기록관리학이 연구와 실천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현장 중심의 실천학문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함. 그래서 기록관리 현장이 중요함.

(다양한 전자기록의 장기보존체계) 저는 주관적이고 개인적이며, 지방자치단체라는 특정된 환경에 대해 말 할 수 밖에 없음. 그러므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더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기 바람. 모든 혁신 과제가 시급하고 중대함. 여기에 쓰인 것이 실현되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음. 기록관리는 새로운 변화에 발 빠르게 쫓아가야 하지만, 과거에 만들어진 것을 끌고 가야함. 혁신과제가 조급하게 나오거나 실행되지 못하면 10년 뒤에 혁신을 이야기할 때 도돌이표가 될 수 있음. 기록물은 전자적으로 생산되어야 하고, 전자적으로 생산되지 않더라도 전자적으로 관리해야 함. 따라서 혁신과제의 대부분의 결과가 전자기록 체제에 녹아들어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함. 특히 반가운 과제가 이메일의 기록화 방안 마련과 기록관리 분류체계 재설계임. 이메일은 기록관리 체제로 편입되어야 한다는 논문과 주장이 있었으나, 아직도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메일도 출력해서 종이문서로 관리해야 함. 공공기관이 공직자 메일을 통해 접수한 것을 기록으로 관리할 수 있는 표준안이 나와야 할 것임.

(새로운 분류체계 설계) 새로운 분류체계가 설계 가능할지 의문임. 기록물분류기준표의 문제점을 개선해서 기록관리기준표를 만들었으나, 사용했던 사람들은 차라리 기록물분류기준표가 나았다는 사람도 있고, 그때 문제라고 제기되었던 것이 여전히 기록관리기준표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은 현장에 있는 분들은 다 아실 것임. 제대로 된 분류체계가 만들어지려면 철저한 업무분석과 기록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함. 분류는 기록관리 체계의 심장이라고 설문원 위원이 어느 글에서 언급하셨는데, 많은 기관이 심장에 지병을 앓고 있다고 생각함. 분류체계는 생산자 기록관 기록원의 이해당자자간의 충분한 협의 필요. 틀을 만들고 수많은 유형에 적용할 수 있는 분류체계가 만들어져야 함.

(전자기록 분류·기술 체계) 철건 구조의 유연적 적용을 환영함. 문서형이 아닌 기록을 철건 구조에 넣은 것은 무리임. 물리적 편철과 논리적 편철의 불일치, 오분류를 보면 문제가 많음. 전자적 환경에서 검색과 열람 시 건검색이나 전문검색을 많이 쓰지, 철이나 그 이상의 상위 검색을 많이 이용하지 않음. 더 이상 이런 계층적 분류가 필요한지도 검토 필요. 어느 책에서 보니, 베어만도 집합기술, 계층적 기술을 종이 문서의 시간적 한계로 주장한 거라는 의견도 있음. 전자적 환경에서는 건에 자동화된 메타데이터 확보와 이것을 활용한 기술이 가능해야한다고 봄.

(현장에 적합한 전자기록관리 체계 설계) 발표자의 의견에 동의하므로, 기록관리 현장에서의 바람을 말하고자 함. 전자기록관리 체계는 전자기록생산시스템과 기록관리시스템으로 구현됨. 기록관리 환경의 제도와 현실의 격차가 큼. 국가기록원과 학계가 선생님이라면 우등생인 제도만 신경을 쓰고, 현장의 기록연구사는 내팽겨 쳐진 기분임. TF에서 현실 분석을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졌으면 함. 현 기록관리 체계가 종이기록 관리에도 안 맞고 전자기록관리에도 안

맞음. 문서24 사이트를 통해 제한적이나마 민간이 정부와 문서를 송수신할 수 있는 사이트가 개설됨. 그러나 종이문서가 아직도 많이 있음. 지자체는 대면 결재가 많고, 중요 문서가 종이문서로 만들어짐.

전자기록생산시스템 거치는 동안 종이기록물이 등록은 되었어도 전자기록물과 별개로 이관하고, 별개로 관리되어 종이기록이 혹이 됨. 실질적인 전자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실물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 기능 필요함. 제목하고 단순한 항목 몇 개 등록 했다고 전부가 아님. 어디 있는지 실물을 못 찾는 문제를 개선 필요

(메타데이터 관리 혁신) 생산 현장에서 누수 되지 않는 기록생산시스템 필요. 메타데이터 혁신이 반영되어야 함. 일상적인 업무 과정에서 기록이 획득되어야 함. 이상적인 기록관리는 생산자가 일상 업무에서 자기도 모르게 기록관리를 훌륭하게 해내는 체계가 되어야 함.

미리 기록관리가 잘 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기록으로 걸려들도록 할 필요가 있음. 회의록 생산 당시 시스템적으로 등록되고, 메타데이터를 획득하는 구조, 간행물도 생산당시 재무관에게 확인 받는 절차를 시스템적으로 구현하는 방안 필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에 기록관리시스템에 대한 권한이 많이 부여되면 좋겠음. 전문요원에 권한을 주되 철저한 이력관리와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주면 문제가 없을 것임.

모든 걸 대량으로 하고, 시스템적으로 엄격한 절차를 갖추게 처리하는 게 많음. 순간 마다 보이는 대로, 한건의 기록에 오타가 보일 수 있음. 이 경우, 정정제목 등 기능이 필요함. 열람제한 오분류 시 재지정할 수 있는 기능 등. 대량 처리가 아닌 일상적 처리도 가능하도록 기록관리시스템을 만들었으면 함. 이용자의 주석이나 기록의 활용을 위해 장려하여야 한다.

시청각, 행정박물을 기록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할 필요 없다고 생각. 표준이나 지침이 확실히 있고 관련 시스템을 통제할 수 있으면 되지, 모두 한 시스템에 넣을 필요는 없다고 봄. 데이터세트를 기로그로 관리는 것도 과욕임. 업무의 어느 부분이 행정정보시스템으로 처리되는지, 어느 부분이 기록인지, 어디까지 보존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고 관리대상으로 정해야 하는지 생각해볼 문제임.

(기록-정보 거버넌스) 온나라 기능개선과 관련해서, 지금도 해결하기 어려운 건, 온나라시스템은 행정안전부 협업정책과에서 담당하고, BRM은 조직기획과와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함. 유관 부서와 협의를 얻어낼 수 있는 자신이 있는지? 데이터세트도 기록물이냐 공공데이터냐에 따라 충돌되거나 중복될 수 있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지 여쭤보고 싶음. 트위터나 페이스북은 외국의 사기업에서 운영하는데, 기업과의 합의 의향이 있는지, 캡쳐를 하는 방안인지, 웹 아카이브 형식을 고려하는지 궁금함. 웹기록물이나 소셜 미디어의 획득과 분류를 위해 이러한 기록을 행정박물이나 간행물과 행정박물 기록의 유형 중 하나로 생각해야 한다고 봄.

실질적인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제안을 해야 한다고 봄. 정보공개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기록을 찾는 것이 많음. 기록은 기록을 검색해야 하며, 잠자는 기록은 검색이 안 되기 때문에 활용이 안 되는 것임. 기록이 활발하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보여줄 수 있는 정보가 많아야 함. 단순한 철 검색이 아닌 일반 검색이 가능해야 하며 관련된 기록을 제안해 줄 수 있어야 하며, 이것을 기록관리시시스템이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함. 네이버 국가기록원 기록물 검색 서비스가 시작되었다는 기사를 봄. 이제 겨우 시작이라 생각이 듦.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도 동참해야 함.

지자체 소속으로서 서울시와 경남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 진행이 부러움. 다른 한편으로 우리 기관에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만들어지는 게 두렵기도 함. 수백억원을 들여 설립 후에 문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못 할 까 우려됨. 소장기록물에 대한 지적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놓고 건립을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음.

☞ **지정토론자(정상희) 질의에 대한 답변(현문수 위원)**

앞서 지적해주신 여러 가지 우려 기록 분류체계, 비전자기록의 관리 체계 누락, 생산통제, 기록통제 관련 사항, 기록관리시스템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 말씀해 주신 현장의 문제들에 대해 분과회의에서 충분히 논의하겠음

전자기록생산 단계에 대한 관리권을 가져올 수 있는 역량이 되는가에 대한 걱정을 해주심. 분과에서 토의하면서, 국가기록원 선생님과 논의해본 결과 BRM 체계와 기록물 분류체계를 분리 운영하는 것이 도전해 볼만한 것으로 얘기됨. 민간 사업자 서비스를 활용하는 SNS 등의 기록화 부분은 대통령기록 분과에서 다뤄주고 있음. 마지막으로 분류체계와 관련된 이견이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실상은 내용적으로는 정상희 선생님 의견과 제 의견이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함. 제가 생각하는 새로운 분류체계가 획득이라든지 물리적인 정리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맥락의 수준이나 집합 수준에서 분류를 염두에 두고, 철건 구조와 관련된 장기적인 유연한 적용을 논의하는 중. 그래서 기록물 유형별로 적절한 집합적인 분류체계 운영은 말씀해 주신 대로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림. 서비스 확장에 대하여는 이용요구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 확장성, 사회적 문화적 가치가 높은 기록에 대해 충분한 가치평가를 하고 공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아야 한다는 제안을 해주셨는데, 토론자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은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함.

전체회의 제4발표 **4. 대통령기록관리 제도 개혁 방향 (이상민 위원)**

□ **지정토론 : 이주환 기록연구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대통령 지정보호 제도) 대통령기록물 관련해서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가 되었음. 아시다시피 노무현 대통령기록물 지정기록물 열람과 관련해서, NLL 관련이나 쌀 직불제 관련 지정기록물 해제 등 대통령기록물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미비점이 발견되고, 사회적 정치적 논란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함. 또한 그런 과정에서 기록에 관한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환기 시키고, 스스로에게도 기록관리를 좀 더 확실히 해야겠다는 의식을 심어주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함.

첫 번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에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으로서 굉장히 당혹스러웠음. 기록을 어떻게 이관해야 하는가 고민됨. 우리기관은 대통령기록물 지정기록물로 이관한 것은 없음. 대통령기록물의 지정 권한을 누가 가지는가에 대한 논란이 발생했음. 원장이나 관장이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 자체가 대통령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아니면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음. 대통령기록관장이나 국가기록원장이 한다는 것도 좋지만, 한국은 미국 등 서구 환경과 다르다고 생각함. 우리나라는 대통령기록관장이나 국가기록원장이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생각함. 이소연 국가기록원장이 새로 와서 환경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으나, 우리가 누차 지켜봤듯이 역대 국가기록원장이 출세의 도구로 활용을 했지, 국가기록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한 사람은 별로 없다고 생각함. 행정안전부 장관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 한 사람이 대통령기록물을 지정한다는 것은 또 다른 우려를 나을 수 있음. 대통령 유고 시에 대통령기록관장이 지정하더라도, 정치적 독립성이 확보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대통령기록관리 기관의 전문성) 기록관장의 독립성 중립성도 중요하나 3번 이관 하며 느낀 바, 대통령기록관 직원도 전문성을 가져야 함 이관을 해야 하는데 카운트 파트너가 다른 부서로 이동함. 대통령기록관 직원이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음. 노무현 대통령 기록물 이관 후에 대통령기록관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었음. 책임성과 전문성을 직원들이 가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대통령기록물을 파악하기 위해 몇 년간 기록물관리 프로세스를 관찰하는 기간이 필요해 보임, 대통령기록관 직원들에게 성과 등 추가적인 보상을 해주고, 힘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국사편찬위원회는 총무과에 행정직이 있는 것 외에는 대부분의 부서가 연구직 공무원으로 구성됨. 대통령기록관이나 국가기록원도 그런 체계를 본받는 게 좋을 것임

(대통령기록 이관) 세 번째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11조제2항 및 시행령 제6조에 이관 시기 연장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대통령 경호 기관에만 해당됨. 제가 속한 기관은 대통령 보좌기관이 아니라 헌법에 근거를 둔 대통령 자문기구이며, 기록관을 두어 기록물을 관리하고 5년에 1번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을 하게 됨. 그런데 우리 기관은 헌법에 의해 기구를 없애지 않는 이상 존속되는 기구인데 5년 마다 모든 기록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함. 그러나 기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필수 기록 등은 이관 연장이나 이관 유예를 통해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필요

(기록관리자의 윤리) 새롭게 정부가 들어서고, 혁신 TF 활동 하는 게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됨. 9년간 보면 기록을 정권 홍보의 차원에서 이용하는 측면이 있었음. 이명박 정부가 처음 들어왔을 때 6.3사태와 관련된 기록 사진전을 한다던가, 물론 기록의 활용 차원에서 훌륭한 기획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역사적 평가가 아직 논란 중에 있는 새마을

운동 관련 기록을 기획 수집을 하는 부분은 기록관리와 관련된 직업윤리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함. 이런 부분들이 국가기록원 뿐 아니라 기록전문가 협회 차원에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지정토론(이주환)에 대한 발표자 답변(이상민 위원)

(대통령 지정보호 제도) 토론에 감사드림 유익한 지적이고, 3분과에서 논의가 되었던 부분이므로 답변을 드리겠음. 첫 번째 지정기록권한과 관련해 문제가 많았는데 미국은 대통령 취임한 직후에 지정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우리는 대통령기록물법 제정 시에 그런 부분을 간과해서 대리인 지정을 과감하게 제시하지 못했었는데 대통령기록물법을 개정할 때 취임 직후 대리인을 지정하고 대리인의 권한-지정, 지정해제, 열람-에 대한 권한과 절차에 대한 부분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대통령기록 관리기관의 전문성) 대통령기록관이나 대통령비서실 안에서 기록관리를 하는 분들의 전문성에 관한 말씀이신데, 사실 정치적으로 압력을 받거나, 혹은 리더쉽이 기록관리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지 못했을 때 전문성을 압살될 수밖에 없음. 이러한 부분이 향후 5년 동안 국가기록원의 중립성·전문성 지향 활동과 병행해서 대통령기록관이나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서 주요한 과제로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 방안 또한 있음. 핵심적인 말로 권한도 확대하고 책임도 확대한다는 것이며, 유한 책임이 아니라 무한책임을 부여해서 자기 권한 내에서 확실히 공개 등 분류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되어있어서, 계속 행정직 과장이 내려오면 어떻게 하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시기적으로 전문직들이 스스로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전문성의 향상으로 인한 효과가 나타나면 기록의 권위로서 극복될 수 있는 시기적인 문제이며 장기적으로 반드시 되는 문제로 본다.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이관 연장과 관련된

문제인데 상시적 자문기구의 기록은 계속 활용되어야 하지 않나하는 부분이 있음. 신임 원장님도 강조하셨지만 기록을 생산한 기관과 국민에 봉사하기 위해 생산 기관의 현실적인 필요와 요구에 맞게 기록관리에 대한 여건을 제공해 주는 게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의 책무라고 생각함. 그런 방향으로도 탄력성을 가지는 게 필요하다는 논의를 했음.

▌분임토의 결과

1. 기록관의 역할과 전문성 강화
2. 지방기록관리 정상화
3. 기록물평가와 분류체계 정비
4. 기록관리 프로세스 개선
5. 기록물공개관리 및 서비스 개선
6. 기록시스템 개선
7. 대통령기록관리 제도개선

Ⅲ. 분임토의 결과

분임토의 제1분임 1. 기록관의 역할과 전문성 강화

□ 1분임 개요

○ **(분 임 명)** 1분임「기록관의 역할과 전문성 강화」

○ **(일　　시)** 2017. 12. 7.(목), 17:00~19:00

○ **(장　　소)** 경주 한화리조트 지하2층 1분임실

○ **(참석인원)** 총 79명

- 각급기관 기록관리 담당자 70명, 위원2명, 국가기록원 직원 7명

□ 주요 논의 내용

○ 특수기록관 기능을 강화하고, 수사 정보, 보안 관련 기록의 접근 권한을 부여하여야 함

○ 인사교류는 기록관리 현장의 전문성을 약화시킬 수 있음

- 강제조항은 아니며 상호간 필요조건이 확립되었을 때 가능하며, 정보교류는 필요하다고 생각됨

○ 1인 기록관의 처우개선 및 체제에 대해 고민 필요

- 직무분석을 통해 업무 성격을 명확히 하는 기록관 정규직제를 만들거나, 복수가 근무하는 정규직제를 생각하고 있음

○ 기록관리와 관련 없는 행정업무도 분장하는 실정임. 기록관을 조직하고, 위상을 줘서 중앙의 연구사가 자율적으로 기능하도록 해야 함

- 획일적인 조직은 한계가 있어 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음

○ 기록관 역할과 전문성 강화에 대해서도 기관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음. 공통사항과 특화사항에 대해 구분하여 방안 제시하는 게 바람직함. TF 해산 이후에도 논의 결과가 국가기록원에 전달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음

○ 국가기록원의 300여명 정도 인력으로는 지적 통제 어려움. 국가기록원의 역할 강화에 대해서도 고민 필요

○ 교육청의 사례를 볼 때, 기록관 조직의 정의가 있어야 하며, 기관 특수성을 감안하여 통합 운영은 신중히 논의되어야 함

○ 기관 사정이 다르므로 기록관에서 꼭 근무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기록관이 기능을 어떻게 더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 필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운영 사례를 볼 때, 독립성, 자율성을 무조건 주는 게 맞는지 모르겠음. 오히려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자율화로 바꾸면 바꾸는 대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음. 장기적으로 1인 기록관은 개선되어야 하나, 통합형이 정답인지는 회의적임

○ 기록연구사의 승진, 신규 채용 등 순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 국가기록원은 군청 등의 지도점검 보다 기록관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잘 되도록 정책반영(로비) 하는데 더욱 노력해야 함

○ 기록관의 정의, 기록관-국가기록원 관계 정립, 전문가의 역할 등에 대한 재정립 필요

○ 마을기록 수집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기록관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제 기능을 할 수 있음

□ 1분임 발표문 : 이강모(국토교통부 기록연구사)

< 전문성 강화 >

○ (**처우개선**) 현재 기록연구사는 소수직렬 이라는 이유로 관심이 제한적이므로 처우개선 등을 위해서는 1인 기록관체계에서 벗어나는 노력이 필요

- 기록관의 위상을 높여 중앙의 연구사가 자율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조직필요**) 보존기간이나 평가에 대해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며, 기록관리 업무외에 타 업무는 지양 필요

○ (**사례1**) 기록연구사가 배치되었으나 정작 하는 업무는 보안이나 당직에 불과한 상황

○ (**사례2**) 교육지원청의 경우 목록만 받아서 폐기를 진행하는 폐기만을 위한 기록연구사로 전락, 심지어는 9개월마다 기관을 옮겨 다니 폐기 진행

○ (**승진**) 연구사에서 연구관으로 승진을 통해야 인력 순환이 가능한데 그게 아직 안되고 있는 상황

○ (**인사교류**) 무조건 현장에서 기록관리 업무를 한다고 해서 실력이 늘어나는 건 아니므로, 기록관리에 대한 공부가 더 필요

- 특히 인사교류에는 정 반대의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으며, 오히려 현장의 전문성을 약화 시킬 수 있으므로 논의가 더 필요

○ (**전문성강화**) 기록관의 역할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 기관의 공통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며, 기관별로 대안이 다르게 나 올수 있음

- 기관 공통적으로 논할 것은 공통사항으로 논의하고, 특화된 사항은 특화된 그룹에서 논의를 통해 대안 마련 필요
-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기록물관리법 개정으로 전체 방향을 모으는 게 바람직함

- 기록물의 평가방법 및 각 기관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를 논의, 그러기위해서는 국가기록원의 역할 강화도 필요

○ (**전문인력 배치**) 인력구조 및 배치에 대한 법률이 너무 경직

- 경찰서나 소방서가 인원이 더 많은 곳도 전문요원배치가 필하며, 「공공기록물법」에서 연구사 배치에 대한 세세한 논의가 필요

○ 기록관과 국가기록원의 관계, 전문화된 업무가 과연 어떤 업무인지, 전문가적 행위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더 고민

- 국가기록원과 각 기관은 여전히 각각의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을 뿐 하나로 된 이야기나 소통이 아직까지 없음

- TF는 논의가 제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인프라를 제시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씩 이야기를 하나씩 진지하게 들어주는 게 앞으로도 더 필요

< 기록관의 역할 강화 >

○ (**영구기록물관리 전환**)기초자치단체도 기록물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전환 필요

- 마을기록을 수집하려고 하면 그 지역을 제대로 알고 있는 지자체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

○ (**기록관리기관평가**)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록관리의 인식전환, 기관의 관심도 제고를 위한 적절한 기록관리 기관 평가 필요

○ (**국가기록원의 역할**)「공공기록물법」을 악용하는 기관이 있을 것이고 이런 사항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기록원이 많은 일을 해야 함

- 기록관리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법률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 진지하게 폐지, 수정 할 것인지 고민

○ (**법령개정**) 개별법의 보존기간 등을 포괄할 수 있게 「공공기록물법」 개정 필요

- 경찰청의 경우에는 기록연구사가 수사나 정보파트의 기록물의 접근조차 못하고 있으니,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접근권한을 부여해야 함

○ (**선거관리위원회**) 17개 시도에 위원회가 있고 시도 밑에 4000여개의 구시군위원회가 있는데 중앙에만 연구사가 있고 17개 위원회에 기록관은 있으나 연구사는 한명도 없음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연구사 배치가 절실하게 필요

분임토의 제2분임

2. 지방기록관리 정상화

□ 2분임 개요

○ **(분 임 명)** 2분임「지방기록관리 정상화」

○ **(일 시)** 2017. 12. 7.(목), 17:50~19:10

○ **(장 소)** 경주 한화리조트 지하2층 2분임실

○ **(참석인원)** 총 30여명

- 각급기관 기록관리 담당자 24명, 위원 2명, 국가기록원 직원 4명

※ 분임장 : 임흥기(전라남도 나주시 지방기록연구사), 서기(강원도 양구군 지방행정주사보)

□ 주요 논의 내용

○ **(처우관련)** 기록연구사의 처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발전이 없음

→ 현재 인력구조 조사 및 진단 후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일부 지자체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여전히 임시직, 계약직 신분으로 기록관리 업무수행

○ **(설치방안)** ❶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콘텐츠, 구조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 필요, ❷ 시설 등의 환경이 만들어져야 내부적인 조직을 만들 수 있으므로 시설 건립도 추진 필요

→ **(인식전환)** 기록이 생산.관리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고, 박물관 등 민간의 문화기관 등과 공동 활용 할 수 있는 체계 구축 필요

→ **(분위기조성)** 기존의 행정처리 차원의 기록관리가 아닌 기록관리 전문가로서 본연의 업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분위기 조성 필요

※ 지방기록관리 정상화를 위해서는 생산현황통보, 평가 등 일부제도 시행 검토 필요

○ **(지원관련)** ❶ 업무영역 등에 대해, 지침.조례 등으로 명시화 필요, ❷ 인건비 관련, 행자부(기록원) 통해 기록관리 인건비를 예산 지침에 반영

→ 지방기록 관리의 정상화 위해 국가기록원은 걸림돌을 찾아 제거해 주고, 장기적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을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해 주는 것 필요

□ 2분임 발표문 : 임홍기(나주시 기록연구사)

○ 제2분임 토의 요약서술
- 기록연구사의 현실, 처우개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발전이 없다는 것 화두였음
- 인력문제 : 현재 인력구조를 진단하자
- 아카이브 설치, 광역은 의무화가 되어 있으나, 지자체는 현실적으로 힘듦

○ 외형 OVS 내부, 시설 VS 조직
- 개선방안 : 광역은 의무화, 기초, 교육청 등은 의무화시키겠다는 시설만 갖춰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음. 하드웨어만으로는 부족하고 컨텐츠, 구조,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없으면 안 됨.
- 시설 등의 환경이 만들어져야 내부적인 조직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이 있음.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설립 관련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립하게 될 때의 부담감은 분명이 존재함. 업무가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개인적인 의견은 영구관리기관이 설립 되어서 공유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내실화하기는 힘들 것 같음. 기록물의 질, 국가기록원과의 유대, 지원 등이 선행적으로 제도화가 되지 않으면 실천되기 어려움. 국가기록원에서 먼저 선행사례로서 보여줄 수 있다면 좋겠음.

○ 기록관리 조직 발전방안
- 먼저 조직이 나서지 않으면 기록관리 발전이 어려움. 지침, 조례 등으로 기록연구사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함.

○ 지방기록관리 발전관련
- 지방기록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발상을 바꿔야 진정한 의미의 기록관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함
- 광역-지자체 2분법으로 기록물관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닌 동일선상에서 다같이 참여, 연대하는 구조가 필요
- 아카이브 역할에 맞는 정책 및 제도를 상급기관에서 제시해주는 것이 좋을 듯 함
- 지방기록관리 정상화를 위해서는 상급기관의 평가 등 일부제도의 혁파가 필요함

○ 대통령 지시사항 반영 관련
- 예전에는 기록물관리 팀, 계가 있었는데, 현재에는 사라진 행정구역도 있다. 중앙에서 대통령지시사항 등으로 팀이나 계를 부활시키거나 만들 수 없는지?

○ 기록물관리 감사 관련
- 감사를 많이 받으면 기록물관리에 대한 윗분들의 인식이 좋아지지 않을까 함
- 국가기록원-지자체의 역할분담을 나누어 교육이나 지원 등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음

분임토의 제3분임

3. 기록물평가와 분류체계 정비

□ 분임토의 개요

○ **(분 임 명)** 3분임「기록물평가와 분류체계 정비」

○ **(일　　시)** 2017. 12. 7.(목), 17:00~19:00

○ **(장　　소)** 경주 한화리조트 지하2층 3분임실

○ **(참석인원)** 총 60여명

- 각급기관 기록관리 담당자 40명, 위원 2명, 국가기록원 직원 10명

□ 주요 논의 내용

○ 기록관리기준표와 BRM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평가도구(기록조사사업) 개발의 필요성 및 방법론

□ 3분임 발표문(이창순 충북보은교육지원청) * 서기:류가현(청주교육대)

1) 기록관리기준표(분류기준표)/BRM 운영 상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기록관리기준표 국가차원에서 공통된 기록관리기준표 개발 관련 : 국가기록원이 중앙에서 운영을 하되, 지자체로 하여금 분담금을 받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

○ 기록연구사가 BRM 함께 관리 기록분류체계는 체계의 문제가 아니라 생산단계에서 생산자(생산단계)의 분류를 기록연구사가 변경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임. 단위과제카드까지 표준화를 시켜 주기적인 카드작성 모니터링을 해봤으나 불가능함. 산자가 오분류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음. 평가단계에서 기록관담당자가 수정할 수 없는 것이 한계. 생산단계에서의 오분류를 정정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한. 운영방식의 대한 기능적인 개선 필요하다고 생각함.

○ BRM을 우리가 너무 단편적으로 보는 것은 아닌가? 사업단위가 하나로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모든 것을 프로세스 단위로 끊어서 만들어 놓으니, 하나의 사업에 대한 문서가 연결성 있게 보존되고 관리되지 못함. 회계문서는 5년, 행정처리는 먼저 이루어지고, 복원은 10년 보존인 사례가 있음.

2) 평가도구(기록조사사업) 개발의 필요성 및 방법론

○ BRM 오분류 정정기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단위과제에 보존기간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음. 업무분석과 기록조사가 함께 이루어져야함.

○ 기록관리기준표 운영 상의 문제점 온나라시스템 문제점. 전년도 편성된 단위과제카드를 이어 쓰기 때문에 잘못된 단위과제를 바로잡을 기회가 없음.

- 단위과제를 생성 절차에 대해 거부감. 반면 단위과제카드 생성은 편하기 때문에 카드만 계속 생성되고, 오분류된 기록이 많음. 보존기간에 대하여 담당자들은 확신이 없음.

- 필수적으로 남겨야 할 기록들에 대한 평가가 선행이 필요함.

- 생산자가 분류한 초기 보존기간이 그대로 평가로 이어지는 것도 문제.

- 철 단위 폐기 문제, 담당자들이 분류하도록 하고 보존기간은 기록관 평가단계에서 보존기간을 책정하는 것은 방안 검토 필요

○ 시스템보다 사용자의 문제점. 사용자 입장에서는 분류에 대하여 어려움. A 연구과제에 예산, 연구과제 수행 등 다양한 프로세스,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출장, 예산, 업무 등 하나의 단위과제 자체가(연구명) 사용자 중심으로 분류 체계 개발하는 것이 오분류

를 최소화 하는 게 아닐까 함

- 건건이 오분류를 확인하고 모니터링 하는 것은 사실 상 불가능. 누가 봐도 직관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사용자 편리를 반영

○ 기록조사사업 보다는 오분류 해결, 철, 건 구분에 대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현재 발생하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3) 정보 부존재에 대한 기록관리 측면의 대응 방안

○ 너무 기록연구사 중심 BRM이 아닌가, 기관 간 계층에 대한 고려 전혀 없고, 같은 업무에 대하여 지방청끼리 다른 단위과제를 사용. 사용자 입장에서의 고려 필요. 중앙과 지방의 역할이나 업무 성격이 다 다름. 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온나라시스템에 등록된 건 다행. 중요한 기록은 온나라로 생산하지 않음. 온나라 이외의 중요한 기록들이 많은데 그러한 기록들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권한과 체계가 필요함. 경찰청의 경우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기록이 너무 많음.

○ 온나라와 RMS 온나라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업무가 훨씬 많아지고 있음. 넓고 포괄적인 관점이 필요. 특행의 경우 중요한 업무에 대한 기록들이 관리대상에서 빠지고 있음. 스케줄링을 도입하면, 프로젝트성 업무도 관리될 수 있도록 기관의 성격에 맞게 조정이 필요함. 근거 없이 보존기간 책정은 위험한 일. 건별 평가가 필요했다면 그에 대한 스케줄이 있었어야 함

○ 앞으로 만들어질 때는 오분류를 최소화 하고 그물망을 넓게, 그렇게 된다면 기록연구사의 역할이 커짐. 무슨 업무를 기록관에서 해야 할 지에 대해 우리가 제시하여야 함

○ 기록조사사업을 한다면 기록 유형을 정하고 어떤 기록이 그에 속하는지가 정해질 것. 우리가 분류를 할 때 일반적 유형을 정해두

고 자연히 분류를 할 수 있도록 자유 형식을 두고 폴더를 만들 수 있게 한다면 자연스럽게 사용자가 분류. 양식 작성부터 통제

○ 기록물 유형에 따라 생산부서 의견조회를 하며 작성한 서울시 평가기준서 운영. 기록물 유형 조사가 필요함.

○ 문체부 소속 대학은 2008년부터 BRM을 사용하고 있었으나 소속기관 간의 인사이동이 잦음. 사용자에 따라 보존기간 책정 결과가 영구, 5년 등으로 달라진다는 것을 다음 해 생산현황통보 할 때 알게 됨. 보존기간에 대한 사용자 이해도가 없어서 어려움. BRM을 통제할 수 없어 어려움. 기록조사사업 할 때 업무담당자의 의견도 함께 반영하고 사용자들이 쉽게 좀 더 쉽게 작성하여 활용도를 높여야 하지 않을까 사용자에게 분류의 중요성 높여야 하고. BRM 관리를 연구사가 안하더라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권한이라도 필요. 학교의 특수성에 맞는 BRM 필요

○ 기록조사를 통해 같은 단위 업무라도 단위별로 보존기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어떨지?

4) 평가정책의 역할

○ BRM 운영은 기록연구사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생산시스템이 중앙행정기관에 맞추어 개발. 특별행정기간의 특수성, 병무청에서는 지방 병무청 업무의 성격이 다른데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을 만드는 성격에 맞추어져있어서 기관 특수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기능 자체가 일률적. 기관의 특수성을 반영(기관 유형에 따라 생산하는 기록이 다양)한 온나라시스템 기능이 필요.

○ 영남대는 BRM 안쓰고 기록물분류기준표 사용. 국가기록원에서 사립대학 관리할 의향이 없다면 관리대상에서 제외해주셨으면. 사립대의 경우, 분류기준표에 대한 개념이 크게 없음. 사립대에 분류체계 운영의 자율성을 좀 주었으면 함.

○ 기록연구사가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기록물을 평가하는가 생각해봄. 기록물평가심의회에서 기록연구사가 재책정으로 심사한 기록물을 모두 보류함. 평가심의회에서는 연구사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 평가 결과를 따라야 함.

○ 현장에서는 기록물철과 단위과제카드의 개념이 동일함. 직접관리기관이라 보존기간 협의. 종이, 전자, 행정정보시스템의 보존기간 동일. 연간생산량이 많을 경우 보존기간 준영구. 단위과제가 동일한 경우에는 문제점이 많음. 세 개의 유형에 대해 보존기간을 달리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함.

○ 기록조사사업이 필요하나, 실행 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분임토의 제4분임

4. 기록관리 프로세스 개선

□ 분임토의 개요

○ **(분 임 명)** 4분임「기록관리 프로세스 개선」

○ **(일　　시)** 2017. 12. 7.(목), 17:00~19:00

○ **(장　　소)** 경주 한화리조트 지하2층 4분임실

○ **(참석인원)** 총 40여명

- 각급기관 기록관리 담당자 35명, 위원1명, 국가기록원 직원 7명

□ 주요 논의 내용

○ 기관평가 지표에 맞추기 위해 생산현황 보고 등 제반 업무를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개선 필요. 전자적으로 기록이 관리되어야 하나 기관 여건 상 어려움 발생. 현장의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인사교류 필요(김형주, 국방기술품질원)

○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 기록관리 전문요원 배치가 필요하며, 국가기록원의 협조 필요. 표준 기록관리시스템의 경우 예산 절감의 효과는 있으나, 기관 고유업무와 관련된 중요 기록을 관리하기 어려움. 따라서 표준 기록관리시스템 사용의 고민 필요(김대율, 정부산하 공공기관 담당자)

○ 공공기록물법과 보안업무규정, 개인정보보호법 등 유관 법령과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 문제가 있음. 타법과 상충되는 법령에 대한 정비 필요. 동일 부처 기록이 국가기록원 소관에 따라 서울, 대전, 부산으로 분산 관리되는 것은 문제가 있음. 또한 동종 대량

의 기준이 모호하여 기관에서 불만 발생. 국가기록원에 이관된 기록에 대한 반환도 필요함(지방보훈청 기록관리 전문요원)

○ 생산현황 통보는 데이터를 신뢰할 수 없음으로 통계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또한 국가기록원이 생산현황을 보고받는 이유를 모르겠음.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받는 기록물은 기관의 관리대상 중 일부이며, 다양한 행정정보데이터세트를 관리할 수 있는 대책 마련 필요

○ 의무기록에 대한 관리 대책 마련 필요. 생산현황 보고는 형식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나 업무 부담이 많음으로 개선 필요. 기관 평가를 위해 업무를 형식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으로 평가 폐지 또는 개선 필요. 군 기관 행정정보데이터 관리가 필요하며, 기록관리시스템의 보존포맷 변환 관련 문제 개선 필요(백종학, 광주지방병무청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 4분임 발표문(이정옥 제주시교육청)

우선 다양한 기관이 모인만큼 성격이 다르고, 그 문제점도 다르다는 전제를 두고 말씀드림

생산현황을 폐지하거나 대폭 개선이 필요. 현실적이지 않고, 꼭 필요하냐는 의문이 있어 왔음. 선별 절차 없이 수집에 급급한 것이 아닌지. 생산현황은 신뢰성에 대한 의문은 있어 왔음. 등록 누락이 많음. 정말 필요한 회의록이 등록되고 있는가. 어떤 회의록을 남겨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단순 의결사항들이 등록되고 있는 상황. 회의록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이 중요한 시점임. 시청각기록, 행정박물 파악이 어려움. 정확성이 의심스러움. RMS 이관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의미 없음. 목적성, 수치 이상의 의미가 있는지, 연계하기에

쉽지 않다.(이관량이 너무 많아서 RMS에 다 안 넘어온다.) 또한 등록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서 값이 쓸모있질 않음. 비밀기록물도 결과값이 안 많음. 대외비는 관리가 없음. 이관에 과연 도움이 되는 건지, 유형을 알고 싶다면 다른 방법을.. 이관을 안 하는데도 관리기관이어서 생산현황 통보. 통계가 목적인지, 생산 유형 파악이 목적인지, 통제 방법의 파악이 목적인지? 방법을 바꿔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기타 공공기관은 신전자를 쓰고 있어서 생산현황보고가 자동으로 연결되지 않음. 교육청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케리스에 수량을 의뢰하고 있는 실정임. 온나라 단위과제도 관리가 안 됨 연구사가 처리부서 단위과제 사용에 개입하기 어려움. 온나라보다 행정정보데이터세트를 더 많이 쓰고 있는데, 출력해서 비전자 관리하고, 국가기록원에서는 양이 많아 다 받을 수 없어서 계속 보류 상태임. 기타 산하 공공기관은 결재받아서 신저자 관리하는 것은 업무의 20%의 불과하고 모두 행정정보데이터 세트 업무임. 연결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기관마다 크기가 달라서 부하에 걸림. 다만 생산량을 통계화하는 측면도 있지만, 기록물 생산을 유도하는 측면도 있음. 기관 및 기록물 형태의 따른 생산현황 보고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 생산현황 보고의 신뢰성이 질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때임. 생산현황보고를 위한 정확한 프로세스가 필요하고 기관 특성에 맞는 서식 제시 필요

이관 동종대량/행정데이터 어떻게 이관할 것인가? 전자적 관리가 안 되어서 종이로 다 관리하게 되는 어려움이 있음. 행정정보데이터 관리 열람은 가능한데, 종이로 관리하다 보면 정부 산하 공공기관은 전부 다른 행정정보데이터를 다 다르게 구현하고 있음. 행정정보데이터세트가 더 많이 쓰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기록관리 모듈에 넣을 것인지. 정의도 명확치 않음.

RMS에서 전자적인 걸 이관하는 것이 문제인데, 한 시스템으로 볼 것인가. 구체화된 기능 구현. 가이드라인 및 강제조항 마련. 행정정보 데이터 세트를 기록으로 보느냐 아니면 개인정보파일로 보느냐에 따라 관리가 달라짐. 행정정보데이터 세트 관련 지침 필요. 시스템이 다 달라서 연동이 안 됨. 누락된 기록물도 있음. 올해 수립 타당성 검토 중 내년 입법 공청회 예정.

교육청 및 지자체는 국가기록원으로 이관이 불가함. 권역별 이관도 현실적으로 위치 반영(제주도-> 대전) 동종대량 기록물이 보존기간 30년 이상인데 이관을 받아주지 않을 경우 해결책 필요. 정리된 기록물은 국가기록원 이관이 이상적임. 기록물관리기관에서의 보존기간 오책정, 하향 조정에 대한 권한 필요함. 건 목록 관리가 평가지표로 되어 있는데 이는 현실적이지 못함. 공공기관은 기록관리 업무에 힘이 없음. 평가 지표 추가 필요. 실제 중요문서는 별첨으로 많이 보내는데, 업무관리시스템에 별도송부라는 탭에 체크할 수 있게 해서 이관 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음. 국가기록원으로 이관 한 기록물 중 반환이 필요한 기록물이 있을 수도 있는데, 현행법상 불가능함

문서보존포맷을 장기보존포맷 전환에 있어 시스템 상 대비가 안 됨. 전자기록물은 폐기되지 않고 누적되고 있는 상황. 또한 포맷변환 오류를 잡지 못함. 기록관리시스템 활용이 안 되고 있음.

현 기록관리 평가 체제 형식적임. 평가 지표를 위한 생산현황 보고, 점검, 공개재분류, 폐기가 이루어짐. 전략적 평가 지표를 만들어야 함. 또는 평가 주기 조정 필요. 전자적 관리를 한다고는 하나 비전자가 더 많음.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부재함.

공공기록물법이 보안업무규정, 개인정보보호법, 채용절차법, 감사원 계산증명규칙 등과 충돌하는 사례가 많음. 개인정보관련 기록의 파기의 경우도 기록물관리법과 맞지 않음. 비정규직 채용 서류와 공무원 채용 서류도 각자 처리하는 법령이 다르기 때문에 보존기간을 세분화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음. 또한, 쪽 번호 기재 등 담당자들이 수행할 수 없는 지침이 많아 간편하게 바뀌었으면 좋겠음.

분임토의 제5분임	5. 기록물 공개관리 및 서비스 개선

□ 분임토의 개요

○ **(분 임 명) 5분임 「기록물 공개관리 및 서비스 확대」**

○ **(일　　시)** 2017. 12. 7.(목), 10:00~12:30

○ **(장　　소)** 경주 한화리조트 지하2층 5분임실

○ **(참석인원)** 총 40여명

- 각급기관 기록관리 담당자 30명, 위원1명, 국가기록원 직원 10명

□ 주요 논의 내용

○ 5년 주기 공개재분류 제도 지속 여부 재검토 필요

○ 현용 기록물과 준현용·비현용 기록물의 공개 근거를 법령상에서 구분 필요

○ 정보공개전문관 도입 등 정보공개법 개정 관련

○ 기록물 관리, 저작권 검토, 정보공개 업무를 전문요원 1인이 부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 비공개 기록물의 제한적 열람제도 신설 필요

○ 기록관리시스템과 정보공개시스템의 통합 활용 방안

○ 기록관리 업무의 기관 내 중요성 및 가치 인식 제고 필요 등

□ 5분임 발표자(이준봉, 경인지방병무청)

○ 5년 주기 공개재분류 제도 지속 여부 재검토 필요

- 1인 기록관의 현실에서 5년 주기 공개재분류 업무 부담 가중

- 기관평가 지표에 공개재분류 업무가 포함되어 있으나, 현장에서는 연간 수십만 건을 공개재분류하게 되어 형식적으로 진행됨

- 비공개 기록물의 비율은 30%이며, 그 중 50% 이상이 비공개 기준 5호에 해당하는 진행 중인 사안이며, 적극적인 공개방안 강구 필요

- 비공개 기록물(1호, 6호)의 공개재분류 유예 필요

- 기관별 공개재분류 관련 자료·정보의 활발한 공유

○ 현용 기록물과 준현용·비현용 기록물의 공개 근거를 법령상에서 구분 필요

- 준현·비현용 기록물은 기록관리법을 적용하여 기록물관리기관을 통한 열람 절차로 하고, 현용 기록물은 정보공개법을 적용한 청구 및 통지 절차로 구분하도록 법령 개정 필요

○ 정보공개법 개정 관련

- 정보공개전문관 제도를 도입 시 전문요원이 정보공개전문관으로 지정되지 않고 정보공개전문관 정원을 추가하여 운영되어야 함

- 정보공개심의회를 권역별로 상설화하는 방안 고민 필요

- 정보공개 관련 악의적 민원에 대한 대응을 법령에 담는 방안 필요

○ 기록물 관리, 저작권 검토, 정보공개 업무를 전문요원 1인이 부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 비공개 기록물의 제한적 열람제도 신설 필요

○ 기록관리시스템과 정보공개시스템의 통합 활용 방안

- 현재는 정보공개시스템과 온나라시스템이 연계되어 정보목록과 원문정보가 공개되나, 향후 기록관리시스템과 정보공개시스템을 연결하여 공개 대상 확대 및 통합검색 서비스 제공 필요

○ 기록관리 업무의 기관 내 중요성 및 가치 인식 제고 필요

분임토의 제6분임	6. 기록시스템 개선

□ 분임토의 개요

○ **(분 임 명)** 6분임 「기록시스템 개선」

○ **(일　　시)** 2017. 12. 7.(목), 17:00~19:00

○ **(장　　소)** 경주 한화리조트 지하 1층 회의실

○ **(참석인원)** 총 33명

- 각급기관 기록관리 담당자 28명, 위원 1명, 국가기록원 직원 4명

□ 주요 논의 내용

○ '차세대 전자기록관리 모형 재설계'의 개발 방향 공유 및 토의

- 모듈화, 오픈 소스를 통한 시스템의 배포 및 활용 방안 등

○ 현행 기록관리체계의 문제점 및 기능 개선 사항

- 행정정보데이터세트 등 다양한 형태의 기록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 필요
- 분류체계 및 메타데이터 관리에서의 유연성 및 서비스 부분의 개선 요구
- 원활한 기록관리를 위한 연관 부서와의 협업체제 마련 필요

□ 6분임 발표문(박혁준, 경북 안동시)

○ 현재의 기록관리시스템은 다양한 기관의 기록관리 요구를 구현할 수 없었음. 하지만, 차세대 기록관리시스템이 오픈소스로 만들어 짐에 따라 다양한 기관의 요구를 구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 되어 지는 것을 기대함.

○ 기록관리시스템은 비전자문서를 스캔하여 서비스할 경우 예전 자료관 시스템보다 낮은 해상도로 서비스 되고 로딩시간이 길어 부서 담당자들이 이용하는 데 애로 사항이 있음. 이것 뿐만아니라 각 기관에서 만들어지는 기록은 기존의 아래한글 형태 뿐만 아니라 CAD, JPG 등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데 기록관리시스템에서는 그것을 제대로 수용하고 서비스하기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세대 기록관리시스템은 오픈소스 및 모듈화 되어 개발되는 만큼 각 기관의 수요에 따라 다양한 뷰어를 탑재하여 기관 이용자들에게 서비스 될 수 있기를 바람.

○ 비치기록물의 경우, 전자기록은 이관이 되나 비전자기록은 이관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차세대 기록관리시스템에서 비치기록물의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 필요.

○ 차세대기록관리시스템은 처분지연의 개념을 적용하여 이관, 폐기 처분절차에 일부 기록을 마이그레이션을 통해 제외하고 진행할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뷰어를 기록관리시스템에 설치하는 것은 그것에 따른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기관의 수요에 따라 선별적으로 기록물 뷰어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행정정보시스템과 같이 굳이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고 시스템은 별도지만 URL 같은 방식으로 타 시스템의 객체를 인식하여 기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불가능 한 경우 기록관리시스템에서 별도의 뷰어를 자체 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기록관리시스템은 모든 기록을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여 활용하는 개념인데, 위와 같은 개념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기록관리 정책과 법률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행정데이터세트 이관이 어려지만, 장기보존 기록, 폐지될 경우 등 몇몇 사례에 해당 될 경우. 선별적으로 이관되어야 함.

○ 기록관리는 생산단계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하는데 생산자를 오타, 오편철 등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록관시스템으로 이관 한 후 메타데이터의 추가적인 입력이 가능해야하고 메타데이터 값과 비트스트림 헤더 값이 같은지 확인하고, 품질검사 등을 통해 오입력된 메타데이터를 찾아 낼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함.

○ 교육부 코러스기록관리시스템 등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기록관리시스템을 개발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러한 개발에 차세대 기록관리시스템이 반영되도록 협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중부발전의 경우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동분류기능을 관련 업체에 의뢰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음. 2개부서의 문서를 제목으로 테스트하여 80퍼센트 정도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전자기록시대가 되면서 기록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음. 이에 따라 기록 생산단계에서부터 기록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반복 업무를 기계나 툴을 활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면 기록연구사의 역량을 좀 더 기록관리를 고도화 시킬 수 있는 영역으로 발휘 할 수 있다고 생각함.

분임토의 제7분임

7. 대통령기록관리 제도개선

□ 분과회의 개요

○ **(분 임 명) 7분임 「대통령기록관리 개선」**

○ **(일 시)** 2017. 12. 7.(목), 17:30~19:30

○ **(장 소) 연찬회 분임토의실**

○ **(참석인원)** 총 12명

- 각급기관 기록관리 담당자 3명, 위원1명, 국가기록원 직원 8명 등

□ 주요 논의 내용

○ 대통령 지정기록물의 제한적 열람 및 명백한 오류 지정 시 해제 방안

○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의 업무 활용을 고려한 기록물 이관 방안

○ 대통령기록물의 범주 명확화 및 평가·선별 강화 및 전자기록 보존·이관체계

○ 디지털 기반 대통령기록관 모델 검토 및 대토령기록관의 독립성·전문성 보장 방안 등

□ 7분임 발표문 (이주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 대통령지정보호제도 >

○ 대통령 또는 측근의 범법행위 등 특별한 경우에만 한정해서 민사소송에서 판사가 지정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대통령기록관의 지정 담당자에게 명확한 오분류에 대한 해제를 법원에 요청할 수 있는 기능 부여(사법부에 의한 오분류 해제)

○ 지정기록물의 관리 담당자를 특정인에게만 부여, 지정기록물의 보존·복원 업무 곤란, 과 단위의 지정담당부서 확대 필요

<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 기록관리 개선 >

○ **대통령 자문기구 등에서 기록물을 선별 이관할 수 있는 방안 필요 (현행 전량 이관 중)**

- 5년단위로 이관되는 대통령기록물 특성상 기록물 평가(폐기)업무 불가
- 중요도가 낮은 기록물, 업무 연속성을 위해 남겨야 할 기록물을 모두 전량 이관함에 따라 업무차질 및 비효율적인 이관 발생

○ **대통령기록물의 범주 명확화 필요**

- 기록생산자에게 등록, 편철업무를 과중하게 부여하는 것은 불가, 시스템으로 생산되는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남겨지는 방식 고려 필요

○ 기록관리담당자에 의한 대통령기록 평가·선별 업무 강화를 통해 남겨야할 기록의 보존강화 및 오분류 방지

○ 전자기록물 이관 시 장기보존포맷 변환의 비효율성, 완전한 이관 여부 확인 곤란 등 문제 발생, 새로운 이관체계 마련 필요

○ 자문기관의 경우, 법에 의하지 않은 기관을 관리대상으로 하고, 법에 의한 기관은 업무 연속성 등을 위해 대통령기록에서 제외하는 방안 고려필요

< 디지털 기반 대통령기록관 모델 정립 >

○ 기록관리의 책임성을 높이고, 적극적인 기록물 활용 등을 위해 개별기록관 모델 검토 필요

○ 기록물 생산이 디지털 중심으로 변한 현실을 고려, 디지털 중심의 기록관 모델을 설계할 경우, 개별 기록관 설치조건 완화 가능

< 대통령기록관의 독립성·전문성 보장 >

○ 대통령기록관의 조직 유형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세부적인 문제를 떠나서 조직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외부 간섭 최소화

분임토의 결과 발표 자유 발언

유영필(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 문서상의 개인정보도 개인정보, 조합에 의한 개인정보도 개인정보이나 개인정보 관리가 강화되면서 문서 안에 적던 개인정보가 사라지고 있다. 기록의 구체성을 담보하지 못하게 됨. 설명책임을 담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함. 30년 공개 원칙, 개인정보보호법이 큰 문제임

고동호(농수산물유통공사 경영지원부장) : 기록관, 정보공개, 공공저작물 담당을 하고 있음, 경영지원부장 업무 맡 은 후 인사부장 설득하고, 부사장 설득하여 신입사원 공채 시 기록관리 5급 공채 직원을 뽑음. 공공기록물법령에 있는 전문요원 배치 기준과 관련하여 우리 기관은 전문요원 2명이 필요함을 말씀드림. 전문요원이라는 말이 기재부 설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적절한 용어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음

김희진(과천시 시설관리공단) : 기재부와의 연관성 관련, 앞선 프로그램인 정부산하공공기관 업무협의회에서도 기재부 얘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한 협의를 잘 하셨으면 좋겠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가지임. 전문요원 배치 문제와 승진 문제임. 전문요원 배치 부분에서 공공기록물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비정규직 문제임. 당사자급, 당사 기관이 했다고 보기 어려운 게 상급기관에서 그렇게 하라고 내려온 경우가 있음. 이는 회의록에도 남아있는 경우가 있음. 그 상급기관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처벌조항, 즉 의무규정을 두어서 협조 공문을 보낸들 실태점검을 해서 컨설팅을 하지 않는 한 바뀌지 않는다고 봄. 행정직들 이야기는 강제조항이 없으면 할 수가 없

고,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고 함.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처벌조항에 대해 검토해 주시기 바람. 두 번째 승진 부분인데, 20년 이상 기록연구사 하신 분들도 연구관으로 승진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음. 전문요원 처우개선, 승진과 관련해서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 등 기타 법들을 보셔서 승진해서 올라갈 수 있는 구조, - 정책을 결정하고 그 영향을 미치는 게 서기관급, 3~4급으로 알고 있음 - 그 구조로 하여 올라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강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오랫동안 해왔고, 이제서야 말씀을 드림

▌기타 의견 접수 결과

- TF 게시판, 이메일 및 공문 접수 의견

1. 기록관리 일반(양승환, 보성군)
2. 기록관리 일반(문정화, 국군의무사령부)
3. 기록관리 일반(익명)
4. 기록관 기능 강화(권영규, 대전지방경찰청)
5. 기록관의 역할과 전문성 강화(조윤희, 한국남동발전)
6. 기록관의 역할과 전문성 강화(성민결)
7. 공공업무의 철저한 기록화, 기록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인프라 정비(정상명,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8. 기록물 공개관리 및 서비스 개선(국방부 계룡대근무지원단)
9. 2분과 '공공기록관리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김정현 경남지방경찰청)

Ⅳ. 기타 의견 접수 결과

접수의견 1 기록관리 일반 (양승환 기록연구사, 보성군)

1-1. 기록관리학 교육기관 관리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양성하는 각 대학(원), 교육원에 대한 관리

- 각 대학(원)기록관리학 과정 인증제 필요 : 커리큘럼 및 교수요원 자격요건 등의 기준을 마련하여, 각 기록관리학 교육기관에 대한 인증제 실시 필요.
- 기록관리 교수요원 자격 규정 : 기록관리 관련 교육 및 연구, 실무 실적에 따라 기록관리 교수요원의 자격요건 규정. 해당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을 시 각 대학(원)기록관리학 과정 인증 취소 등 검토 필요.

1-2. 비정규직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에 대한 실태 조사 및 정규직 전환 : 해당 기관의 기록물을 장기적으로 연구하고 관리해야 할 전문요원의 신분 보장 및 안정적인 업무환경 조성.

1-3. 신규전문요원 배치전, 신규전문요원 교육이수 의무화 : 대학원, 교육원을 갓 졸업하고, 배치된 전문요원의 기록물관리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배치전 신규전문요원 교육이수 의무화 제도 필요.

1-4. 기록물관리전문요원 배치기준 변경 : 현재 총원의 1/4을 기록물관리전문요원으로 배치해야 한다는 규정은 실효성이 없는 사문화된 조항임. 기록물관리전문요원 배치기준을 변경함이 필요.

1-5. 전문요원 및 처리과 기록물관리책임자 업무분장 개선(각 처리과당 전담기록물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처리과 기록관리 업무 담당하도록 함)

1-6. 관리대상 처리과 기준 규정 : 각 교육(지원)청의 경우, 관리대상 처리과의 격차가 심함. 기록관 1팀당 관리가능한 처리과 규모를 분석하여, 관리대상 처리과를 규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함.

1-7. 기록물 비생산(부존재) 심사(감사) 제도 : 기록물 비생산 심사(감사) 제도를 추진하여 처리과의 기록물 생산 및 등록 유도

1-8. 기록관(조직)설치 기준 규정 : 시행령은 기록물관리부서에 설치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의 기록관 조직은 전문요원 1인 기록관 체계로, 기록관이로고도 부를 수 없는 현실임. 기록관 조직 설치기준(특히 전문 인력부분, 직제를 중심으로)마련하던가, 지자체의 경우 기록관리 조례등에 설치기준을 반영하도록 하여야 함.

1-9. 기록관리법에 민간 기록관 지원 근거 마련(지방기록과 관련) : 각 지자체 기록관에서 민간기록물을 수집하여 관리/서비스하기엔 어려움이 존재. 민간 기록물 관리기관 기준 마련과 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접수의견 2 기록관리 일반(문정화, 국군의무사령부)

1. 행정정보테이터 관리에 대한 메뉴얼이 정확하게 없는 것에 대한 어려움, 이관 등 실질적인 관리방안에 대해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 기록물 생산현황을 매년 국가기록원으로 제출하는데 실제 기록물 관리함에 있어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3. 매년 국가기록원에서 기관평가를 하는데 실제 기록물관리를 함에 있어 기록물평가항목 위주의 업무로 진행하게 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로 지금 우리기관은 현재 신규 기록관 설립함에 따라 설계, 공사감독, 장비 구입 등 혼자서 기록물 관련한 큰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년 기록물 기관평가 시 실질 항목에 있지 않은 업무를 하고 있고 누구 보다 큰 성과를 내고 있지만 크게 업무에 대한 성과를 내세우기 어렵습니다.

   기관장은 결과(기관평가점수)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기관평가도 매년 실시하는 것은 실제로 기록물업무를 함에 있어서 힘듭니다.

접수의견 3 기록관리 일반(익명)

기록관리혁신 TF 연찬회를 앞두고 발표자료가 발표되면서 점차 이에 대한 관심도 커져가고 있다. 아직까지 혁신안에 어떤 대안이 담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전에 발표자료를 공개하여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은 좋은 시도라고 본다. 또한 얼마전 이소연 교수님이 국가기록원장으로 임명되면서 이에 대한 기대도 큰 상황이다. 다만 이와 별개로 현장에서 발표안의 내용에 대한 반응은 어떠할까? 의외로 반응은 싸늘했다.

얼마 전 모 지자체의 연구사를 만날 기회가 있었다. 혁신안에 대해 이야기를 하니 “내년에 혁신안까지 하게 되면 어떻게 버텨낼까 모르겠다. 사람도 더 안주는 판인데요”라는 말부터 대뜸 나왔다. 전체의 의견이라 하기는 어렵겠지만 현장의 전문요원들에게 공통적으로 담겨 있는 우려는 대부분 공통되어 있다. “혁신안이 나온다 해도 인력증원이 안되면 무슨 소용이냐. 결국 부담만 늘고 나아질 것이 뭐가 있겠느냐”라는 것이다. 심지어 통합기록관에 대해서는 “통합운영을 핑계로 정원이나 감축 안하면 다행이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대놓고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서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일선 전문요원 사이에 있는 냉소와 우려가 생각보다 적지 않다는 의미라 봐도 될 것이다. 전문요원의 사명감으로 극복하라 할 수도 있겠지만 과중한 업무량과 나쁜 처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마냥 사명감 이야기만 하는 것은 이제 미안할 정도다.

혁신안이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총론도 중요하지만 미시적인 각론에 신경을 써야 할때다. 물론 이는 국가기록원에서 혁신안을 기반으로 한 기록관리 추진계획에서 더 드러나겠지만 현장에서 나오는 메시지, 비록 그것이 사소해보이고 지엽적인 사안으로 보일지라도 좀

더 우려를 가지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어떻게 인력증원을 해나가고 그에 맞춰 혁신안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이 정확히 제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물론 일선기관에서 알아서 인력을 증원하는데 힘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게 진즉 되었다면 1인 기록관 이야기는 아마 나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얼마전 검찰청에서 자체적으로 특수기록관을 만들고 있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정작 기록연구사 인력은 아예 확보조차 못했다는-정확히는 기재부 예산을 받아내지 못했다-상황이지 않은가.

접수의견 4 기록관 기능 강화(권영규, 대전지방경찰청)

1. 통합기록관 : 본청 및 지방청 기록관 강화

설문원 교수님 등의 발표나 최근 올라온 발표문을 보면 통합기록관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표적인 예로 경찰청을 들고 계십니다.

경찰청의 경우 본청 + 17개 지방청에 연구사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통합할 경우 1개 계단위를 가볍게 넘어서는 규모입니다.
하지만 경찰 조직의 내부를 들여다 보면 이런 논의는 현실을 모르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 생각됩니다.

경찰은 본청, 17개 지방청 밑에 254개의 경찰서, 경찰서마다 하부에 5~10개 이상의 지구대, 파출소가 존재합니다. 경찰의 대민과 밀접하게 관련된 서비스는 경찰서를 중심으로 지구대.파출소 단위에서 대부분 이뤄진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찰서 단위에 기록연구사가 배치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250명 이상의 인원을 연구사로 채용하기는 불가능 하다고 보며, 경찰서 자체의 크기도 편차가 크다는 점(1급지~3급지, 1,000명 이상인 곳도 있는 반면에 200명이 채 안 되는 곳도 있음)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편 현재 지방청에 1인씩 배치되어 있는 연구사들의 업무분장을 보더라도 경찰서에 배치된 연구사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기는 어렵다고 보기에, 상당수의 지방경찰청 소속 연구사들은 인력이 증원된다면, 지방청 기록관을 강화하고 연구사 1인이 몇 개의 경찰서를 담당하는 방식이 경찰청 기록관의 적정한 구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찰 현원 및 경찰서 수를 보더라도(경찰 총 인원 : 117,679명) 본청

및 소속기관(지방청 제외) : 1,835명인데 반해 서울청:27,498(31개서) 부산청 9,008(15개서) 대구청:5,614(10개서) 인천청:5,876(10개서) 광주청:3,369(5개서) 대전청:3,039(6개서) 울산청:2,487(4개서) 경기남부청:16,292(30개서) 경기북부청:5,599(12개서) 강원청:4,169(17개서) 충북청:3,450(12개서) 충남청:4,706(16개서) 전북청:4,801(15개서) 전남청:5,388(21개서) 경북청:6,245(24개서) 경남청:6,613(23개서) 제주청:1,690(3개서)

* 일반직 공무원:3,964명, 무기계약직:2,003명 포함 총 123,646명

이런 인력구조 속에서 본청에 모여서 전 경찰관서를 아우를 수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개혁안 중에 정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개선안에는 동의하지만 그 인력의 배치에 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관의 자율성도 보장한다고 하시긴 하지만 위에 언급한 부분이 반영된 기록관(또는 기록관리조직)이 마련되긴 쉽지 않다고 봅니다. 자칫 기록관 설치기준에 따라 1인씩이나마 배치되었던(기록관리 업무를 얼마나 잘 할 수 있냐는 논외로 하고) 기록관리 전문요원 수조차도 '통합기록관'이란 허울 또는 '기관의 자율성'이란 명분으로 지키지 못 하는 것은 아닐지 걱정해봅니다. (경찰청 통합기록관을 두고 상상해본다면 18명이나 되었던 기록연구사가 제가 퇴직하고난 뒤에는 일반직이나 경찰을 포함해서 18명이나마 유지하는 건 아닌지...) 인력이 증원된다면 위에 상황 등이 고려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합니다.

물론 제 이야기는 현재의 기록관리프로세스가 획기적인 변화가 없었을 때를 가정한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획기적인 개선이 이뤄진다면(전이 부분이 기록의 생산단계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보장되고, 각정 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개입이 이뤄지는 형태라고 봅니다)

본청단위에서 통합기록관을 설립하거나, 기록관이라는 틀을 벗어나서 각 부서(교통,생활안전,수사,형사 등등)에 배치되는 것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재의 개혁 논의가 '획기적인 개선'을 담보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는 의문이 듭니다. 이 상황에서 경찰청 본청 기록관은 '기록관리기준표에 대한 개입', '정보시스템 도입시 정보보유 형태 및 보유기간 등에 대한 관여하거나 각 부서의 정책 등에 개입하는 역할을 하면서 조직 및 인력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지방청 단위에서 개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역할이 경찰청을 비롯한 부처 본부에 있는 기록관이 해줘야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2. 특수기록관 폐지

특수기록을 제대로 수집한(이관 받은) 특수기록관이 있는가? 이관이나 받아보고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언급하고 싶은 부분은 특수기록관의 존재 의의가 '비공개기록물에 대한 30년 이관 보류' 부분인가, '특수기록'이란 측면인가 하는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단순히 이관연기라고 한다면 특수기록관의 기록연구사로서 미련은 없습니다. 그냥 기록관이라서 10년 안에 빨리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당초 특수기록을 중시해서 아니면 기관의 특성을 반영해서(잘 안 넘길게 뻔한) 특수기록관을 설치했다면, '특수기록'이 '특수기록관'에 철저히 이관될 수 있는 명분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명분에 따라 인력이 증원되고, 서비스 등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기록이 수사부서에서 비치기록이라거나 정보보안과 같은 곳에서는 온나라나 비전자문서 형태(기록관에서 파악할 수 있고 이관받을 수 있는)로 생산하지 않는 행태를 그대로 두고볼 수밖에 없게하는 요소들을 법적으로 제거하려는 노력이 꼭 필요

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특수기록관만의 업무영역도 창출될 수 있다고 봅니다.

검찰의 예를 들면 사건기록관리하는 전담부서가 있고 기록관은 해당 기록의 폐기에나 관여하는 것은 사건기록이라는 기관의 핵심기록을 기록관에서 관리하지 못 하게 하는 검찰내부의 검찰보존사무규칙과 같이 공공기록물관리법과 배치되는 부분을 용인한다면, 특수기록관의 존립 가치는 사라진다고 봅니다. 특수기록관에 대한 폐지보다는 이런 부분을 강력히 시정할 수 있는 근거가 이번 법령 개정 논의에서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3. '기록의 철저한 생산 담보' 혹은 '각종 생산시스템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에 대한 관리'가 가능한 프로세스 개선 관련

제가 처음 경찰청 기록연구사로 일선 경찰서에 가서 기록관리교육을 했을 때 들었던 이야기가 "우린 온나라로 중요한 기록 생산 안 해요" 였습니다. 비전자기록(예를 들면 수사기록 중 비전자가 원본인 서류)마저 점점 줄고, 기록으로 포착되지도 않는 것 같고, 일정기간(보존기간 등의 고려 없이)이 지나면 사라지는 데이터를 맘대로 생산하는 각종 시스템들이 통제없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상황 속에서, 또는 정보과 혹은 보안과 처럼 기관의 특성이라는 명분에서 특수한 시스템으로 기록을 생산하고, 해당 기록(혹은 데이터?)은 얼마 후 자동으로 시스템에서 사라지는 것을 그저 지켜봐야 하는 현 상황에서 처음에 들었던 처음 들었던 말이 점점 더 맘을 어지럽게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기록관리시스템 개선과 관련해서 행정정보데이터세트의 관리 등을 논하는 것은 어찌 보면 가장 급선무가 아닌 것 같습니다. T/F의 개선안에서 이 부분에 대해 중요시 하시는 것 같지만, 뚜렷한 개선안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도 물론 이 부분에 대한 뚜렷한 견해는 없지만, 답답한 맘에 강조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접수의견 5 기록관의 역할과 전문성 강화(조윤희, 한국남동발전)

1. 기록관의 역할과 전문성 강화 관련

- 정부산하 공공기관의 대다수는 자체관리대상기관으로써 기록관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성격을 같이 겸하고 있음. 정부산하 기관의 경우 중앙부처, 지자체 등 행정기관과 다르게 전문요원이 전자문서 생산시스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기록물 생산과 관리의 컨트롤 타워로써 역할을 지향하고 있음

- 그러나 그 역할을 1인체계로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조직정원의 1/4수준의 조직이나 인력배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그러나 전담조직 및 전담직원은 꼭 필요하며 우리기관 기준으로 부장급 1인 / 차장급 3명 / 직원 3명(전문요원 2명)의 구성이 적정함.

- 우리기관은 현재 기록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추가채용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분장은 기록물관리 전략 및 사업소 기록물관리 총괄 / 본사 기록관, 사료실 운영 / 기록물 평가. 폐기 이런식으로 크게 분장하여 진행하고 있음

2. 기록관리 프로세스 개선 관련

- 현재 법령상 기록관리 프로세스는 오프라인 기록물관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됨. 시스템적 이관 역시 사람이 일일이 정리/이관 행위를 수행함으로써 기록물관리에 대한 현업에서의 업무부담은 계속적인 사항임.

-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기관은 자체 개발을 통해 구축한 업무관리시스템과 기록관리시스템(이하 ‘기록e음’)의 실시간 이관을 통해 현업에서의 기록물관리 부담을 줄이고 중앙에서 기능분류와 목적별 분류체계를 컨트롤하여 그 효과성을 일단위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직의 목표지향적인 업무행위에 직접적으로 효과성을 계량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름

접수의견 6 기록관의 역할과 전문성 강화(성민결, 강원지방병무청)

공문을 받은 지 시간이 경과하였으나 의견을 오늘까지 받는다는 사실을 이제야 인지하게 되어 시간 관계로 짤막하게 의견을 밝히겠습니다.

금번 연찬회의 해당주제 발표자료 중 ‘통합형 기록관’이라는 화두가 등장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이하 ‘특행’) 및 교육행정기관들이 적용대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통합이라는 말은 ‘모아서 관리함’이고 효율성을 위해 지상의 방안으로 최근 몇 년간 기록공동체에서 논의되어오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통합의 이면은 중앙집권화입니다. 과거 수십년 간 한국의 정치체제는 중앙집권화에서 탈중심화, 지방분권화로 이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기록물관리는 그에 역행하려드는 것이 지상과제처럼 여겨지는 것인지 납득이 어렵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이하 ‘중앙’)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해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 현황점검이나 실태조사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특별지방행정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입장에서 중앙이 특행에서 관리하는 기록물의 특성, 업무의 특성에 대해서 몇 퍼센트나 파악하고 있을지 의문입니다. 아직까지 면밀한 실태조사 혹은 관리방안이 대두된 부서가 한 군데도 없는 줄로 압니다.

또한, 통합형 기록관에 부전지처럼 붙는 논의가 기존 특행기관에 종사하던 연구사들을 부서 통합형 기록관에 불러모으고자 하는 것입니다. 단언컨대, 이렇게 되면 통합은커녕 분열이 예상됩니다. 각 기관에서 연구

사들은 자기 나름의 자긍심을 갖고 공공기록물관리 제도의 실질적 실행이 부재한 사항에서 자기만의 방식을 확립해왔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연구직'으로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해당기관의 특성에 맞게 특화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그런 사람들은 본부에 기록관을 만들었으니 오라고 부르게 되면, 그들은 자신의 관할영역과 연구성과를 버려둔 채 '통합'이라는 전가의 보도에 수긍하여야 합니다. 좀 질박한 말을 쓰자면 그리고 그 자긍심 높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서로 확립한 스타일이 부딪혀 엄청난 싸움과 분열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현실적인 측면에서 검토하여 보면 특행뿐만 아니라 특행 이하의 3, 4차 소속기관 중에서도 조직과 생산하는 기록물의 중요성 때문에 도리어 기록연구사가 더 세밀하게 배치되어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로 지방검찰청 예하의 검찰지청, 지방경찰청 예하의 경찰서, 소방청 예하의 소방서가 그 예입니다. 이 밖에도 통계청, 특허청, 중소벤처기업청, 기상청의 특행기관 등도 보훈청, 병무청등과 다를 바 없이 생산되는 기록물의 밀착케어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법령상 기록연구사 배치대상 기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미배치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록연구사가 각 기관에 세밀하게 배치됨으로써 '기록관리 인식과 문화의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일정부분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기록관리라는 영역 자체가 인식이 부족하고, 관료제 체제하에서 새로운 것에 대한 확산이 느린 것을 감안하더라도 성과가 없다고 단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합형 기록관이라는 논지를 내세우는 것은 소수의 이익을 위한 야심을 효율적인 기록물관리, 조직력을 바탕으로 한 효

과적인 연구라는 미명을 덮어씌우는 것에 다름아닐 뿐입니다. 만에 하나 통합형 기록관을 하려거든 기존 특행, 교육지원청의 인력구조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안을 강구하면서 새로운 인력배치를 전제로 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통합형 기록관은 여러 측면에서 필요합니다. 언제까지나 각 지방청에 중요기록물을 산개된채 방치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며, 이를 자체적으로 관리할 전문적인 시설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국가기록원이 모든 걸 다 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각 부처 자체적인 통합형 기록관을 만드는 것도 기록의 중앙집권화를 방지하기 위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방분권화, 기록의 분권화를 외치며 각 부서에게는 기록관리의 중앙집권화를 권장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노릇입니다. 여러 각도에서의 검토와 실태조사 등이 실시되어야 하며 체계적인 설문조사와 의견수렴이 더욱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단순히 "모아놓으면 찾기 쉽고, 힘도 강해지니까 모으자"라는 논리가 단지 목소리 큰 몇몇 사람들의 성토에 의해 무조건적으로 정당화되는 현 흐름은 분연히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판단했기에 이와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접수의견 7 공공업무의 철저한 기록화/기록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 · 인프라 정비(정상명,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기록물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상명이라고 합니다.

지난 10년간 누적된 기록관리 현장의 모순을 조금이나마 바로잡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오랜 기간 앞장서서 노력하신 분들이 활동하시는 국가기록관리 혁신 T/F에 대해 멀리서나마 응원을 보냅니다.

2017년 기록관리 담당자 연찬회는 회의록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밝혔듯, 국가기록관리 혁신 T/F의 활동에 따른 기록관리 개선방향에 대한 현장의 의견과 기탄없이 소통을 실시하겠다는 의지의 결과로 보입니다. 물론 일정이나 규모 등 연찬회 추진에 대한 세부 방법론에 대해서는 앞서 여러 기록인들이 요청 또는 지적한 바와 같이 일부 아쉬움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취지 등을 비추어 볼 때 어떠한 방식으로든 필요한 절차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12월 6일과 7일 양일간의 연찬회에서 다뤄질 핵심 주제에 대한 발표문이 국가기록원 국가기록관리 혁신 T/F 게시판을 통해 공개가 되었습니다. 저는 기존의 정해진 업무 일정과 개인적인 여건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1박 2일의 일정에 참석하지 못해, 이렇게 미리 공표된 발표문을 바탕으로 4가지의 주제 중 제가 근무하는 현장과 관련성이 높은 주제인 1번과 2번 주제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조금이나마 개진해보고자 합니다.

2. 두 가지 주제에 대한 짧은 의견

국가기록원에서 밝힌 발표 1번과 2번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공업무의 철저한 기록화(설문원 위원)
나. 기록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 · 인프라 정비(이원규 위원)

가. 공공업무의 철저한 기록화

먼저 첫 번째 발표 주제인 공공업무의 철저한 기록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에서는 기록물을 정의하고 이 기록물에 대한 생산 · 접수 이후의 관리 단계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즉 법 제1조의 목적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에 관한 조항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정작 기록물에 대한 생산 · 접수 시점 및 그 이전의 단계에 대해서는 공공기록물법이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이러한 생산 · 접수와 관련된 기록물의 법적 효력은 공공기록물법이 아닌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이하 '행정효율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행정효율규정의 공문서는 공공기록물법의 기록물과 유형과 정의가 유사합니다. 그리고 이 공문서의 처리와 성립 및 효력발생에 대해 제5조(문서의 전자적 처리)와 제6조(문서의 성립및효력 발생)의 규정에 명확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행정 · 공공기관의 각종 기안문 · 시행문 등 기록물은 행정효율규정에 따른 문서 검토 · 협조 및 결재 과정을 통해 법적 효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록물법에 따른 기록물의 생산·등록에 대한 법적 효력을 구비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행정효율규정에서의 문서와 관련된 규정을 공공기록물법령으로 모두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령 개정 등의 논의에서 이러한 흡수가 불가능하다면 공공기록물법의 기록물에 대한 법적 효력은 행정효율규정의 관련 조항을 따른다는 식의 문구를 분명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대통령기록물과 관련된 각종 쟁송에 대한 판례도 결국 행정효율규정에 따른 조항을 근거로 법원의 해석과 판단에 따라 형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공공기록물의 생산 단계 통제를 위해서는 행정효율규정의 조항을 포섭하거나 또는 인용하여 명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각 기관의 행정기구 설치와 업무 내용은 법령 또는 조례·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에 따라 업무 연관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생산·접수 기록물은 필히 행정효율규정에 따른 결재 및 공공기록물법에서 명시된 바와 같은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징계 수준을 달리하는 벌칙 조항을 신설하여 연계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되면 생산자 및 접수자에 의한 임의의 미등록 또는 누락되는 사례가 최소화되고, 극히 예외적인 사례를 제외한다면 대부분 법령상 통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기록평가도구의 재설계 부분에서 보존기간의 유연화는 공공기록물법에서 단독으로 규정하기 보다는 개별법의 각 기록물 유형에 따른 보존기간 유형 등을 충분히 수집·분석한 후에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현재 개별법에서 관련 기록물 등에 대해 보존기간을 직접 명시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일부에서 논의되는 바와 같이 지나치게 보존기간을 간소화하는 경우 개별법에서 명시된 보존기간과의 상이함에 따라 실제 현장에서의 기준 적용의 이원화 등 관리 상 어려움이 유발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공공기관에서의 일부 업무는 민사·행정소송에도 대비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 관련 기록물은 법적으로도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보통 개별법에도 보존기간 또는 관리연한을 명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개별법에서의 보존기간 등을 전수 조사하여 종합적으로 분석 및 검토한 후 각 법령과도 조화가 이뤄질 수 있는 보존기간 유형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국가기록원이 기록관리기준표를 승인하는 구조는 현재와 동일한데, 사실 국가기록원이 승인해주고 있는 각 기관의 기록관리기준표를 이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최근에 제정을 추진 중인 교육청 공통 단위과제 및 보존기간 표준(안)을 보았을 때도, 국가기록원이 각 기관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각종 개별법 상의 보존기간 또는 관리연한을 파악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록관리기준표의 포괄성, 영구·한시 구분을 국가기록원이 앞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이런 부분은 국가기록원과 협의를 할 사안이지 일방적인 승인을 받을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국가기록원이 승인 주체가 되려면 각 기관의 업무와 그에 따른 기록물에 대해 정통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아니면 승인보다는 협의가 적절할 것입니다.
기록처분 동결제도에 대해서는 앞선 사례 등을 통해 적절한 법적 근거 마련 후 도입이 되면 각 기관의 부적절한 폐기 집행 등을 방지할 수 있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나. 기록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인프라 정비

다음은 기록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정비 분야입니다. 이 주제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은 기록관의 강화입니다.

개선방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대로 된 조직으로의 정비는 필수적이며 이에 대한 총론은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공공기록물법에 기록관이라는 조직을 법적으로 직제화하여 각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조직을 구축하고 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하며, 이는 각 기관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법령과 매칭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경우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의 조항에 따라 운영됩니다. 타 기관도 마찬가지이므로 법령의 실효성을 위해 이러한 조직 및 인력과 관련된 법령과의 법적 근거를 최대한 연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자율화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1사 1관 체제라고 전제하셨는데, 일단 1사 1관이 없는 기관도 아직까지 많습니다. 즉 1기관에 1전문요원이 되지 않는 기관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2017년 4월 현재 관할 학교가 공・사립학교 총합 4,665개(학급수 68,199개, 학생수 1,724,09명)이며, 업무관리시스템을 쓰는 교원은 119,745명, 지방공무원은 12,438명입니다. 교육지원청은 25개로 전국 최다이며 직속기관도 16개입니다.
경기도는 지역이 광활한 관계로 이곳에 있는 행정기관의 경우 대부분 수원을 중심으로 하는 경기남부와 의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경기북부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역시 수원 본청과 의정부 북부청사를 포함해 1실 4국 5담당관 4단 22과에 100개가 넘는 담당(팀)이 존재하는 규모가 방대한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본청과 북부청사 어디에도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은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기록관 역할을 수행하는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에 배치된 1인의 기록연구사가 수원 본청과 의정부 북부청사 및 472개의 고등학교와 각종학교를 포함해 500개가 넘는 학교를 전담하는 이러한 상황에서의 자율화 논의는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현행 공공기록물법상 경기도 내 25개 교육지원청에 최소 1인 이상의 기록연구직이 배치가 되어야 하나 2017년 현재 경기도교육청에는 고작 8명이 배치되어 있고, 2018년 발령대상자와 채용예정인원을 포함해도 채 20명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즉 경기도교육청 본청과 북부청사에 기록연구직의 배치는커녕, 25개 교육지원청에도 최소 정원이 확보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기록관리 현실입니다.
이 상황으로 가면 25개 교육지원청 중 상시 배치가 될 9개의 규모가 큰 교육지원청을 제외한 나머지 16개 교육지원청은 고작 절반의 인력으로 퇴직할 때까지 순환근무를 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지금의 통합형과 같은 맥락의 주장을 조직 및 정원담당 부서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8년도까지 계획대로 기록연구직이 확보되어 2019년에 배치가 완료되면 대략 17명 내외가 될 예정인데, 이 인원들이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이든 어디든 모여서 경기도교육청 전체 기록물관리를 총괄하면 되지 않느냐. 왜 25개 교육지원청에 무조건 1인씩 배치를 해야 하느냐. 특히 학교 수가 적은 지역은 기록연구직 배치가 무의미하며, 큰 규모의 교육지원청 배치와도 형평성이 맞지 않다. 전자기록 비중이 높기 때문에 한 곳에 모여 원격으로 관리하되 필요하면 출장 등을 통해 기록물관리를 하면 되지 않느냐. 등이 그들이 내세우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단일 행정기관으로는 국내 최대 인원인 약 13만 명의 교직원과 4,700여개의 각급학교를 거느리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의 규모를 감안할 때, 고작 십 수 명의 기록연구직이 한 곳에 모여 기록물관리를 하겠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일까요? 이렇게 모이게 되면 물론 팀 또는 과 단위의 조직을 신설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렇게 조직이 신설된다고 해서 교육지원청과 각급학교의 기록물관리의 질의 향상을 담보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교육지원청 또는 각급학교의 현장과 유리된 채 그들끼리 모여 그들만을 위한 형식적인 기록물관리 업무로 흐르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통합형 모델은 이제 갓 각 기관에 인력배치가 완료되거나 완료조차 되지 않고 있는 현 시점이 아닌, 기록관 조직의 정규화 및 독립화가 제대로 정착하고 난 뒤에 장단점을 면밀히 따져본 후 논의를 해도 전혀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록관의 역할 중에 정보관리 파트의 정보공개, 정보보호, 데이터관리 등도 기록관의 조직 및 직제와 맞물려 심도 깊은 논의 후에 전개가 되어야 할 내용이라고 판단합니다. 지금의 기록관에서는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이나 역량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 조직화 후 업무 다양화로 가야할 것입니다. 각 기록관이 유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조직 및 직제 구성과 인력배치가 반드시 선결되어야 합니다.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의 재정립도 제도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국가기록원의 전문성은 현장에서 볼 때 매우 부족하며 현장에 대한 인식도 낮습니다. 시험 등의 과정을 통해 초임 발령부터 국가기록원에 근무하게 될 경우 퇴직할 때까지 오로지 국가기록원 내부에서만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과연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나 기록관 단위의 업무나 일선 현장에서의 기록물관리 업무 현실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현실을 모르는데 현실을 위한 제도 개선이나 법령 개정이 국가기록원으로부터 도출이 될 수 있을까요? 따라서 모든 기록관 단위에서 공감할 수 있는 기록물관리 법제도 등을 수립하고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국가기록원의 구성원 역시 기록관 및 지방기록물관리기관 등에서의 업무 경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각 기관 간 주기적인 인사교류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합니다.

지방기록물관리기관과 관련하여서는 우선 시·도에서 시·도교육청의 기록물을 관리하는 조항은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시·도와 시·도교육청은 교육업무 분야에서 필요에 따라 협조하나 근본적으로 시·도와 시·도교육청은 별개의 자치단체로 시·도가 시·도교육청의 기록물을 관리해야 할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서울기록원에서도 서울시교육청의 기록물 이관 및 관리에 대한 불가능성과 어려움을 여러 차례 피력하며 제도 개선을 주장했고, 경기도청 역시 서울기록원 건립 초기에 경기도 지방기록물관리기관 도입을 검토한 적이 있었는데, 이 때 경기도청 및 산하 31개 시군의 기록물만으로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면서 경기도교육청의 기록물은 아예 관리대상 범주로 포함할 수도 없다며 현행 법령의 불합리성에 대해 토로한 바 있습니다.
시·도 및 시군구와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간의 기록물관리 업무상 어떠한 접점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시·도교육청 기록물의 시·도 지방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 조항은 비현실적이므로 반드시 개정이 필요합니다.
한편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현재 건립을 추진 중인 서울기록원 또는 경남기록원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수년 전 경기도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에 부지 매입, 기록관 건립, 기록관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대략 1천억 원으로 추산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경기도 혼자 온전히 부담할 수 없는 금액이라 31개 시군에게 일부 예산의 지원을 요청하는 방안과 더불어 협동조합 형태의 운영모델을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의 인천광역시의 인천기록원 설립도 이와 비슷한 1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기사가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광역지방자치단체만의 예산만으로 추진하기 쉽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 등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시·도 및 시군구와 같이 지방세 등 자체 수입원이 없고 오로지

중앙정부에서 편성되어 누리과정 등 지출이 고정된 경직성 예산만으로 운영되는 시·도교육청의 예산 상황은 더욱 열악하므로 지방기록물관리기관 건립 시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막대한 예산 등의 부담으로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에 대체적으로 소극적이기 때문에 행·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설립에 대해 유도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록관리자 인력구조 개편입니다. 우선 현행 법령에 따라 1사 1관이 되지 않는 기관은 국가기록원이 해당 기관 유형별로 그룹을 묶어 기관장 협의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에도 정원 및 조직 담당 사무관 및 주무관급과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및 교육지원청 기록연구사 간의 몇 차례 협의를 했으나 유의미한 결론이 도출된 적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국가기록원이 경기도교육청을 포함해 전문요원 배치율이 100%가 되지 못하는 전남, 경북 등의 시·도 교육감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 조직 구성 및 인력 배치 등 기록물관리 업무 전반에 대해 적극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관장간의 협의가 여러 가지 일정으로 어렵다면 부기관장(부교육감) 또는 최소 실국장급간의 간부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방식을 현재까지 미채용하고 있는 기관 그룹별로 국가기록원이 주도하여 추진해준다면, 결정권도 없는 실무자들끼리 갑론을박 하는 것보다는 훨씬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또한 행정기관의 임기제와 공공기관의 계약직 형태의 채용구조는 개선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임기제 및 계약직의 경우 근무기간이 제한되어 있어 조직에 대한 소속감을 갖기 어렵고, 재계약을 맺는 절차로 인해 전문성과 책임감을 발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담당자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고용

의 불안정성에 노출되어 재직 중에도 연구직 또는 정규직으로의 이직을 지속적으로 고려하게 되어 기록물관리 업무의 일관성·연속성 측면에서도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현재 임기제의 대부분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 경기도의 31개 시군도 임기제, 시간제의 비율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국가기록원이 같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인사제도과 등과 적극적으로 인사채용 방식에 대해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협의 결과가 국가기록원이 아닌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명의로 발송되어 각 광역지방자치단체 인사과를 거쳐 다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인사팀으로 최종 도달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즉, 실질적인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직접 움직일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마 지금보다는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채용 방식이 연구직 등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부족하다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배치 또는 임기제 형태 기관의 기관장들을 불러 협의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 역시 각 소관 중앙부처 공공기관 담당 부서 등과 적극적인 업무 협의를 통해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한다면 기록관리자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3. 나가며

앞서 언급한 주제 외에도 전자기록 관리와 공개서비스 그리고 대통령기록관리 제도도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이 높은 주제들입니다.

전자기록의 경우 현재 RMS 상에서의 전자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항이며 행정정보시스템의 데이터세트 관리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 현재의 기록물관리에 포함되지 않는 이메일, SNS, 웹페이지 등의 기록화도 중요한 이슈 중 하나입니다. 대통령기록관리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는 동안 공감하기 어려운 방식의 업무처리 절차를 수없이 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면적인 법령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10년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 세월동안 누적된 모순의 무게는 적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의 국가기록관리 혁신 T/F의 활동, 민간 전문가의 국가기록원장 취임, 12월 6일과 7일 양일간의 연찬회만으로는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에 터무니없이 부족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또 적지 않은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적어도 3년의 시간이 저희에게 주어진 셈입니다. 이 기간 동안 누적된 모순과 문제점을 최대한 빠르게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기록관리 혁신 T/F가 성공하고 신임 국가기록원장이 성공하길 희망합니다. 이 성공이 기록물관리 현장에서도 이어질 수 있길 희망합니다. 이를 통해 기록물관리 업무가 과거와 같이 부당한 권력에 의해 독립성·중립성 그리고 전문성을 상실하는 모습을 재현하지 않길 희망합니다.

다시 한 번 기록물관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또 그 본질이 국민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하며 궁극적으로 역사를 두려워하는 국가기록물관리 체계가 확고하게 구축되길 바랍니다. 이번 연찬회가 그러한 변화의 도화선이 되길 기대합니다.

접수의견 8 기록물 공개관리 및 서비스 개선(국방부 계룡대 근무지원단)

□ 토의 안건

○ 기록관의 공개재분류 개선, 30년 공개 원칙 적용 및 비공개 상한제도 구체화 필요성과 방식, 기록물관리기관 기록정보 서비스 개선 방안

□ 토의 의견

○ 기록관 공개재분류 개선

- 현실태 / 문제점 : 5년 도래 기록물 공개재분류시 법률상 기관 전 생산·접수 문서건[전자/비전자]에 모두 시행하게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기관 해당년도 전 문서건이 건이 너무 많아 시행에 애로가 있으며, 실질적으로 해당기관의 생산문서건 만 처리하기도 벅차며, 접수건은 다른 기관에서 생산한 것으로 그 기관에서 재분류를 시행을 하므로 중복의 의미도 있음.

- 개선 방안 : 5년 도래 기록물 공개재분류시 기록관리지침상 기관 생산문서건[전자/비전자]에 대해서만 재분류 시행 명시

○ 30년 공개 원칙 적용 및 비공개 상한제도 구체화 필요성과 방식

- 현실태 / 문제점 : 군기관의 경우 공개시 국가 안전에 상당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사항이 있으므로 30년 공개 원칙 적용에 애로가 있으며, 공개에 대한 언제까지 상한기간을 정하는 기준을 만드는 것이 어려움이 있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표준이 필요함.

- 개선 방안 : 국가기록관리위원회 / 기록관리협회 등의 협의에 의거한 표준 제정 필요

○ 기록물관리기관 기록정보 서비스 개선 방안

- 현실태 / 문제점 : 군기관의 경우 폐쇄망 기관으로 외부 민간이 접근하기 힘들며,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알기 힘들며, 기록정보는 내부 직원에게 거의 서비스되는 실정임.

- 개선 방안 : 정보공개 공무원창구[정보공개시스템]상 사전정보공표 목록을 다수 발굴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 및 전시회 개최로 일반인이 접할 수 있는 공간의 장을 마련

접수의견 9 2분과 '공공기록관리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김정현 경남지방경찰청)

우선 국가기록혁신 TF 2분과 위원장으로 활동중이신 설문원 교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10여년간의 기록물관리는 양적으로는 기록연구사 배치 확대라는 양적 측면에서의 발전은 가져왔으나, 정권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의지 결여, 정치적 논란 및 국가기록원과 학계, 일선 기록물관리전문요원과의 갈등이 불거지는 등 내적으로는 상당히 병들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이하 전문요원)들의 경우 거의 대부분 기관규모와 무관하게 1인 기록관체제에서 근무하면서 불안한 처우(임기제 공무원) 및 불합리한 인사대우 및 업무분장으로 잦은 이직과 의욕상실이라는 악순환에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록관리혁신 TF의 활동이 시작된다는 사실은 현재 근무중인 전문요원들에게는 가뭄속 단비와 같은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해당 활동에 대하여 전혀 인지조차 못하는 전문요원도 있으며, 여전히 이러한 활동에 의구심을 가지는-정확히는 회의적인-전문요원도 있는 실정입니다. 전문요원의 기대 또는 냉소를 누구보다도 더 잘 인지하고 계시리라 생각하기에 그 어깨가 더욱 무거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여기서는 중앙부처 및 특행, 지자체, 교육청, 기타 공사공단 등을 통칭-별로 소속된 기관의 특성과 입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최근 TF게시판 및 한국기록전문가협회에서 조사한 의견들을 종합해보면 이해관계에 따라 주장하는 바에 상당한 온도차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기록관 기능 자체의 강화를 외치거나 그 반대로 기록관 자체를 해체하자는 주장까지 있으며 기록물관리의 각론에서도 이는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어떠한 안으로 혁신안이 나오더라도 결국

이에 반발하는 여론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각 기록관-범위는 중앙부처 및 광역시도단위-별로 기록관리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하여 기관의 여건에 맞는 기록관리 원칙을 수립하고, 국가기록원에서는 전체적인 방향설정 및 전자기록물 보존 및 생산통제에 대한 방안 마련, 일선기관의 기록물관리 업무 지원에 집중하는 방향이 맞다고 봅니다.

기록관의 기능강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혁신안에서는 정규 업무 조직으로 직제에 반영하고 이를 독립기구화 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나, 중요한 것은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강제조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조직규모에 따라 인력배치를 준수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하여 기관장, 정원 및 인사담당자에 대하여 징계요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법적 고려 없이 인력증원 자체의 시도를 막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로 하여금 법적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지자체의 경우 총액인건비제라는 장애물이 있어 이를 무리하게 적용하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중앙부처 및 소속기관에서는 충분히 적용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통합형 운영시 이를 빌미로 인력증원을 막고 기존의 인력만으로 별도 부서를 운영토록 하는 꼼수-심하면 아예 정원감축까지 시도-를 각 기관에서 시도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막기 위한 규정 또는 감사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기록관의 소속기관 탈피의 관점에서 보면 기록관의 기능을 소속기관으로 유지할 경우 계나 과 단위로 확대시킨다 해도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일례로 지자체에도 기록물관리계-가령 구청이나 시군단위에도 있는 곳이 생각보다 있는 편-가 존재하나 실상 기록물관리계의 구성은 전문요원 1명, 나머지는 우편물이나 체송, 정보공개가 전부입니다. 결국 1인 기록관체제는 달라질 게 없었다는 의미

입니다. 또한 계나 과로 독립한다 하더라도 현 상태에서 계나 과를 신설한다면 예산이나 인력확보에서 항상 밀릴 가능성이 높으며 성과평가 등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실상 제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한 몫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속기관에서 벗어난다면 과거 추진했던 적이 있는 소수직렬 통합정원제의 형식으로 특정기관으로 기록연구사 정원을 전부 이체하고 각 기관에는 필요시 파견형태의 방법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정기관에서 기관규모에 따라 유동적으로 인력을 파견하면서 적절한 인원확보를 도모할 수 있으며, 기록연구관 등 상위직급 정원 확보에도 상대적으로 유리한 이점이 있습니다. 단, 이 방법은 과거 무리하게 시도했다가 전문요원의 심한 반발에 부딪혀 결국 실패한 전력이 있는 만큼, 시행 시 정책의 취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의견수렴을 통해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력증원이 되더라도 이것이 하루아침에 가능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속적인 채용인원 발굴 및 예산, 정원 확보 등의 이유로 인력은 순차적으로 증원될 것인데, 이러한 과도기 상황에서 혁신방안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기존의 전문요원들의 업무가 가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몇 년전 전자기록물 이관 시작 당시의 상황처럼 업무만 증가하고 인력증원은 전혀 이뤄지지 않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력증원과 함께 새로 적용할 업무에 대한 타임테이블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별개로 혁신 사례 중 경찰청 통합기록관 운영에 대한 부분이 사례도 소개되어 있는데, 현재 해당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올해 상반기 경찰청 소속의 기록연구사들이 모여서 통합기록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는 지방청에 있는 기록관의 통합개념이라기 보다는 검찰 특수기록관의 사례처럼 경찰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보존기간 30년 이상의 기록물을 한곳에 통합하여 보관하는 시설을 만들어보자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특별행정기관 소속 기록관을 본청소속으로 일괄 통합하여 운영하자는 주장은 그 자체는 일리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소속기관의 숫자나 위치 등에 따라서는 맞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가령, 병무청과 같이 지방청 산하에 소속기관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충분히 고려해 볼만하나, 경찰청의 경우 지방경찰청 산하에도 경찰서가 최소 3곳(제주지방경찰청)에서 많은 곳은 41개(서울경찰청)이 소재해 있습니다. 보존기간 30년 이상의 수사기록은 지방청 보다 각 경찰서에서 더욱 많이 생산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본청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식은 각 경찰서의 기록물 관리 감독이 취약해질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멀리 갈 것도 없이 본청(서울 소재)에서 경찰서 감독을 나가는 것과 각 지방청에서 나가는 것은 물리적 거리 등을 이유로 그 난이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특별행정기관의 기록관이 집행기능만 수행한다고 하나, 실제로 기록물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은 본청의 지시와 별개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러한 주장이 100% 맞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각에서 주장하는 특별행정기관의 기록관 폐지를 일괄적으로 밀어붙이는 것 보다는 기관의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기록연구사들의 사기진작 방안: 특별승급제 도입

현재 기록연구사들의 경우 고용은 보장되어 있으나 거의 대부분 1인 기록관 체제로 인하여 상위직급으로 승진이 사실상 막혀있는 상황입니다. 국가기록원을 제외하고는 기록연구관이 손에 꼽을 수준이며, 나머지 기관의 경우 재직한지 10년이 넘었음에도 여전히 연구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장 상위직급을 만드는 것이 쉬운일

은 아니므로 단기적인 대책일 수 있으나 지금보다 더욱 적극적인 사기진작 방법을 채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매년 국가기록원에서는 기록물평가 우수기관 및 개인에 대하여 훈포장에서 장관 또는 국무총리 표창 등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개인에게 영예인 것은 맞으나 표창 자체는 실질적으로 효력은 거의 없는-물론 근무평정에서 가산점이 되나, 사실상 승진이 안되는 상황에서는 큰 의미가 없음-실정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표창에서 벗어나 특별승급과 같은 금전적 보상이 주어질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합니다. 현재 제안자가 근무하는 기관에서도 각 기능별로 매년 특별승급자를 선발하여 호봉을 특별승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상자에게 장기적인 소득증가로 이어지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단순 표창보다 더욱 효과적인 동기부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선 기관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고, 승급인원을 3~4명 이내에서 부여할 수 있다면 충분히 실현가능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